

1901年 濟州民亂의 再檢討

金 洋 植*

I. 머리말

1901년 濟州民亂은 반식민지적인 한반도 정세하에 제국주의적 속성이 있는 프랑스 천주교의 교세확장과 이에 따른 폐단, 그리고 光武政權의 조세수탈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일어났다. 1900년 전후 발생한 단일 민란으로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가장 고양된 항쟁이었다.

특히 이 민란은 천주교인과의 무력충돌로 600여명의 천주교인 사망자를 냈고 프랑스와의 국제적인 외교사안으로까지 비화되었다. 이는 중국의 義和團運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제국주의의 종교적 침투에 대한 민중들의 反帝國的 저항이 표출된 教案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진전되었음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¹⁾

* 단국대 시간강사

1) 이에 관한 대표적인 논저와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柳洪烈, <濟州島에 있어서의 天主教迫害—1901年の 教難—>《李丙熙博士華甲記念論叢》, 1956.

林廣成, <1901年 濟州島 民亂의 原因에 對하여—辛丑 天主教 迫害事件—>《論文集》第2輯, 仁川教育大學, 1967.

金玉姬, 《濟州島辛丑年教難史》(太和出版社, 1980).

鄭鎮珪, <1901年 濟州民亂에 관한 一考—所謂 辛丑教難의 發生 原因을 中心으로—>《韓國學論集》第3輯, 1983.

이기석, <1901년 제주민란의 성격과 구조>《종교 인간 사회》(서의필선생 회갑 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1988).

姜昌一, <1901年の濟州島民亂について—韓末天主教の性格と關連して>, 미간행논문.

첫째 민란을 다루는 시각상의 문제이다. 기존 대부분의 글들은 이를 천주교 박해사건, 또는 제주도민의 영웅적인 義擧 내지 단순한 국지적인 민란이라는 관점에서 서술된 것이 많았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당시의 국제적·국가적·지역적 실상을 소홀히 한 채 사건 그 자체에만 접근하는 방법론상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실상은 물론 한반도 전체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민란의 객관적 조건을 찾고 이에 대응하는 제주도민의 주체적인 양태를 규명하는 운동사적 인식이 요청된다.

둘째 자료취급상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주로 이용된 자료는 천주교측 입장만 강조한 천주교측 자료와 지방관들의 보고에 기초한 《皇城新聞》·《官報》, 그리고 靈養 金允植이 전문한 《續陰晴史》였다. 이들 자료는 기록자에 따라 달리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각각의 사실에 대한 상호분석이나 사료비판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특정자료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내용상의 문제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료해석상의 문제에서 파생된 것으로, 특정자료를 편향되게 해석하거나 잘못 이해한 나머지 분석내용이 불일치하거나 오류가 발견되는 부분이 있다. 그 중에서도 봉기의 발단이나 제주도민이 천주교인과 극한 투쟁을 전개한 원인 내지 투쟁과정, 또는 일본인 관련 여부등이 지적될 수 있다. 組織 및 指導部問題 역시 비록 商務社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再考의 여지가 있다.

本稿는 이같은 점에 유의하면서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민란의 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이를 토대로 참여계층·지도부·일본인 관련문제등을

柳洪烈·金玉姬는 천주교인의 희생울 강조하여 천주교 박해사건이었다는 종교적인 인식이 강조되었고, 金泰能이나 향토사가들에 의해서는 사건 자체에만 역점을 두어 제주도민의 영웅적인 義擧로, 朴廣成은 조선말기 자연발생적으로 봉기한 民亂과 다를 바 없는 敎難으로 보았다. 鄭鎭珪은 제주도민의 단합과 의세에 대한 단호한 항거였다고 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국지적인 협소한 인식을 벗어나지 못한 감이 있다. 이기석은 전체적인 시각이 천주교와 商務社와의 대립구도에만 놓여 있어 도식적인 해석을 한 감이 있다. 다만 姜昌一만은 이같은 인식상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민중운동사적 시각에서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연결시켜 객관적·주체적 논의를 전개하여 제주도 민란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였다.

분석하여 민란의 구조와 성격을 재검토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위 문제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민란 관련인물들의 報告書·供草·訴狀에 더 사료적 가치를 두고서 사실에 접근하였다. 특히 《駐韓日本公使館記錄》日本巡查의 현지 調查報告書와 그 別紙 附屬書의 활용은 자료상의 한계성을 보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²⁾

II. 民亂의 배경

1. 제주도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저항의식

제주도는 한반도 남단의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열악한 자연환경과 자급자족적인 경제조건하에 있었다. 즉 절대경지가 부족한 데다가³⁾ 그 농경지마저 척박한 밭 중심이어서 農生產性이 낮았다.⁴⁾

제주도민은 이를 위해 토지를 개간하거나 노동력을 많이 투입함으로써,

- 2) 이 자료는 國史編纂委員會가 소장하고 있는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901年度各領事館來信》, 1901년 6월 5·15일자 在木浦日本領事の 在京城日本公使前館 第11·13號 보고서와 그 별지 및 부속서류이다.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보고서 본문보다 일본 목포영사관에서 파견된 2명의 일본순사가 濟州民軍이 官軍과 대치하고 있었던 6월 2~11일간 현지에서 직접 조사·청취한 것을 6월 3일과 11일자로 목포영사관에 보고한 第1·2回報告書 별지이다. 특히 李在「樹」가 飛揚島에 있는 일본인 荒川에게 보낸 1901년 6월 2일자 서한과 東西陣民軍이 6월 5, 6일경 濟州牧使에게 제출한 <三郡都民等狀>과 <三郡大小民人等狀> 草案 사본과 같은 부속서류는 민란의 구조와 성격을 밝히는데 높은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조사된 내용중 다른 자료와 비교해 보았을 때 몇 가지 사실에 오류가 있는 만큼 취급상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이 외에 다른 報告書가 있으나 별다른 내용은 없다.
- 3) 1900년대 중엽 제주도의 경지면적은 방목지면적 16% 정도를 합쳐도 이용가능한 유효면적이 전체면적의 20%에 불과하였으며(《韓國土地農產調查報告》慶尙·全羅道篇, 1906, 563쪽), 1909년경 경지이용율 역시 전국이 105.6%인데 비하여 56.2%에 불과하였다(《朝鮮總督府統計年報》1909년도분, 403-477쪽).
- 4)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09년도분, 393-394쪽과 《增補耽羅誌》에 의하면 밭이 전체 경작지의 99.7%와 95.8%에 각각 이르고 있다. 1910년경 農生產性은 제주도 3郡의 土地 및 勞動生產性이 육지의 다른 郡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특히 土地生產性이 낮아 농경지가 척박하다는 증거를 반영하고 있다(宮嶋博史, <土地調査事業の歴史的前提條件の形成> 《朝鮮史研究會論文集》第12輯, 1975.3, 表 2·3 참조).

또는 목초지를 이용한 축산업이나 어업을 통해 낮은 농업생산성을 보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山村의 주민은 半牧·半農, 해변의 주민은 半農·半漁의 경제생활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⁵⁾ 어업은 비록 4면이 바다라는 지정학적 잇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주민이 거의 없었다.⁶⁾ 오히려 제주도민은 그 利權을 일본 어민들에게 침탈당하고 있었다.⁷⁾ 따라서 더 중심적인 생활기반은 田作과 牧畜이었다.

그렇지만 제주도민의 농업생산성 향상에는 일정한 한계성이 있었다. 田作의 경우 농업생산성이 낮은 데다 경작지마저 부족하여, 혹 화전개간을 통한 경작지 확대를 꾀하여도 地代 성격을 가진 과중한 火田稅나 場稅와 같은 부견적인 잉여생산물 수탈로 인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없었다. 또한 목축업도 대부분의 목초지가 13餘場으로 구분된 국가 소유의 牧場土였으므로, 이들 지역에서의 방목이나 개간경작은 조세를 납부해야만 하였다.⁸⁾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기반은 열악한 상태였으며 그 생활수준도 비슷한 경제적 조건 하에 전반적으로 낮은 실정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하지 않았다.⁹⁾

또한 제주도는 舊韓末 農民分解와 地主經營이 강화되던 육지 상황과는 달랐다. 封建身分制나 地主佃戶制가 대단히 미약했던 제주도는 육지의 산간지방에서 처럼 대지주가 없이 중소지주나 영세한 자작농·자소작농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미개간 국유지가 많고 어업·목축등의 보조생계수단이 확보될 수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無產者나 임노동자 또는 乞人은 거의 없었다.¹⁰⁾

5) 《韓國水産誌》3卷, 1908~1911, 387쪽.

6) 위 책, 387쪽.

7) 李元淳, 〈韓末 濟州島通漁問題 一致〉《歷史教育》10, 1967 참조.

8) 이와 같은 火田·場稅의 濫徵은 1862년과 1898년 濟州島 農民蜂起의 주요한 원인이었다〔金鎮鳳, 〈哲宗朝의 濟州民亂에 대하여〉《史學研究》21, 1968; 權仁赫, 〈哲宗朝 濟州民亂의 檢討—濟州牧按覈狀啓錄을 중심으로〉《邊太燮博士華甲記念史學論叢》(三英社, 1986), 〈19世紀 前半 濟州地方의 社會經濟構造와 그 變動—哲宗朝 濟州民亂과 관련하여—〉《李元淳教授華甲記念史學論叢》(教學社, 1986); 조성윤, 〈1898년 제주도 민란의 구조와 성격—남학당의 활동과 관련하여〉《한국 전통사회의 구조와 변동》(文學과 知性社, 1986) 참조].

9) 《韓國水産誌》앞 책, 388쪽; 朝鮮總督府, 《生活狀態調査》2, 濟州島, 1929, 163쪽 참조.

10) 위 책 참조.

따라서 제주도는 육지와는 달리 사회경제적 동질성이 강하였고 이는 농민항쟁시 동일한 적대세력에 대한 강한 계급적 연대성을 발휘하여 全島民이 참여할 수 있었던 조건이 되곤 하였다.

한편 제주도민의 생활상의 위약상을 증폭시킨 것은 土地保有構造와 租稅收取構造上的 문제에도 있었다. 원래 제주도의 경지는 본질적으로 公土(官屯田·宮房田·牧場土)로써¹¹⁾ 전담에는 소유권이 없었으며 그 매매 역시 오직 사용권의 매매에 불과하였다.¹²⁾ 대부분의 농민들도 자신의 소유토지가 없이 公土를 借耕하였으므로 地稅가 아닌 地代를 납부하는 국가소작인으로 존재하였다.¹³⁾ 따라서 도민들은 耕作權·畝音權·地代率 등이 불안하면 이를 매개로 한 봉건적 수탈·착취가 용이하게 자행될 수 있는 토지보유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제주도는 貢物 上納을 제외하고는 행정과 재정운영이 거의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앙의 지배를 거의 받지 않는 자의적인 통치구조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관의 악용의 소지가 많았다.¹⁴⁾ 이러한 통치구조는 열악한 토지보유구조와 결합되면서 지방관의 제도적·자의적인 조세수취를 더욱 가능하게 하였다. 그래서 제주도에 부임한 牧使들은 거의 다 수탈을 일삼았다고 한다.¹⁵⁾

그 예로 1899년 부임하였다가 1901년 민란이 발발하기 직전에 퇴임한 李庠珪 목사는 도임한지 20여일만에 6萬兩이나 되는 巨金을 贓錢하였다.¹⁶⁾ 또 退任하기 전 田訟·山訟·東學罪·陰奸罪·鄉任件으로 24명에게 수탈한 돈이 17,870兩이나 되어 1인당 평균 700兩을 넘게 탈취한 일도 있었다.¹⁷⁾ 또한 郡守·書記·鎭將들도 각종 명목으로 가렴주구를 일삼았으니, 1900년까지만

11) 18세기말 제주도의 公·私土 비율은 公土가 99.2%에 이르고 있어, 실질적으로 거의 私有地가 없던 상태였다(姜昌一, 앞 논문, <表 5> 참조).

12) 《韓國土地農產調查報告》앞 책, 565쪽.

13) 姜昌一, 앞 논문, 54쪽.

14) 조성윤, 앞 논문, 212쪽.

15) 濟州島, 《濟州島誌》上, 1982, 350쪽.

16) 金允樞, 《續陰晴史》(國史編纂委員會, 1960), 光武 3年 12月 31日條.

17) 《Mutel 文書: 濟州-156》, 金玉姬, 앞 책, 자료편.

해도 이들에 의한 피해가 천주교인의 피해보다 더 막대하였다고 한다.¹⁸⁾

그래서 제주도는 전통적으로 국가권력의 수탈에 대한 저항의식이 강하였다. 19세기 후반기 제주도는 全島的인 규모의 봉기가 네 차례나 있었다. 1862년 전국적인 농민항쟁기에 場·火田稅의 濫徵과 賤役의 불공평으로 일어난 봉기,¹⁹⁾ 또 1888년 이후 전국 각지에서 농민봉기가 속출하던 상황에서 1890~1891년 2차에 걸쳐 지방관들의 가렴주구에 항거한 일이 있고, 1896년에는 牧 대신 觀察府를 두고 警務廳을 신설한 것에 반대하는 거사가 있었다. 그리고 1898년에는 과중한 火田·馬場·戶布稅의 징수와 관리들의 탐학으로 南學黨 房星七을 중심으로 무력봉기하였다가 실패한 일도 있었다.²⁰⁾

1901년 봉기가 있기 전에도 민중사회에서는 봉건적 수탈에 대한 저항의식이 표출되고 있었다. 즉 과중한 場·火田稅를 혁파하고자 1898년 봉기한 남학당 주도의 항쟁이 실패로 돌아간 뒤, 1899년 1·2월 또 다시 항쟁의 움직임이 있었고²¹⁾ 上京하여 지방관을 고소한 일도 있었다.²²⁾ 또 1899년 12월에는 민회를 개최하여 탐학한 관리들을 성토하자는 격문이 성문에 나붙기도 하였다.²³⁾

아무튼 19세기 제주도 민중운동은 비록 제주도 특유의 정치혁명성·분리주의 내지 독립주의적 성향이 내재해 있었을지라도, 기본적으로 열악한 사회경제구조속에서 지대와 공물을 통한 봉건적 수탈이라는 구조적 모순에 저항한 反封建運動이었다.²⁴⁾ 이는 한반도 전체를 놓고 볼 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여타의 지역보다 많은 운동경험을 반영한 것으로, 모순에 대한 제주도민

18) 《皇城新聞》，광무 4년 12월 12일조.

19) 金頽鳳·權仁赫, 앞 논문 참조.

20) 조성윤, 앞 논문; 姜昌一, 앞 논문, 79-87쪽 참조.

21) 「聞旌義民有等訴事 百餘名入城 又聞外村各面通文 以爲有三件事 民間受害 將質問歸正云」《續陰晴史》，광무 3년 1월 23일조 및 「民擾之說盛行 或云 秀田民欲爲房賊報讎」《續陰晴史》，광무 3년 2월 13일조.

22) 「濟州民文哥·大靜民李哥 上京告訴其官長以人命事 自法部有兩郡守押上之訓令」《續陰晴史》，광무 3년 2월 5일조.

23) 「近日汲頭帖掛於四門云 牧使到任二十日 贓錢爲六萬兩 振古所無 民不聊生 將於本月十五日聚會 問牧使以下五人之罪 此等微文 日日貼文 州內人情恟恟」《續陰晴史》，광무 3년 12월 31일조.

24) 姜昌一, 앞 논문, 75-76쪽.

의 주체적인 저항역량의 성장을 말해주는 것이다.

2. 조세수취 문제와 제주도에서의 稅弊

1894년 이후 비록 甲午改革과 光武改革이 있었지만, 다분히 제도상의 근대적 개혁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종래의 봉건적 모순이 온존·심화된 채 일반 민중에게는 제도적인 수탈체계가 강화되는 법적 조처에 지나지 않았다.

광무정부는 수취제도의 근대적 개혁이란 명목하에 지방재정을 전부 중앙재정에 편입시켜 일원화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乙未查辦과 光武查檢을 통해 국가지주제를 강화시키는 한편, 定賭·加賭·量田을 통해 결과적으로 地代와 地稅를 인상시켜 농민에 대한 수탈을 가중시켰다.²⁵⁾ 또한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광무정부는 元定·結戶兩稅 외에 전에 없던 戶主稅·文檢稅·官繩索錢·漁場稅·市場稅 등의 각종 세목하에 雜稅를 부과하기도 하였다.²⁶⁾ 심지어 한 전답에 세 가지 세금이 부과되거나²⁷⁾ 한 물품에 여섯 가지 세금이 과세되는 예도 다반사였다.²⁸⁾

더욱이 이같은 조세와 잡세의 수취는 중간수취자에 의해 배가되는 양상이었다. 광무정부는 派員·督刷官·稅監·捧稅官 등으로 불리워지는 稅員을 파견하여 세원조사와 세금납부를 독촉하였다. 이들 稅員은 조세수취과정에서 해당 사항이 안되는 전답·물품에까지 과세하거나 기존의 耕作權·畝音權등에 간섭하여 재래의 토지보유구조를 재편성시키는 등 作弊를 불법적으로 자행하였다.²⁹⁾ 일반 농민들에 있어서는 중앙—지방관—농민이라는 租稅收取體系가 중앙—세원—농민으로 變位됨에 따라,³⁰⁾ 기존 지방관들의 가렴

25) 光武政府의 조세정책과 이에 따른 농민층의 동향에 대해서는 姜昌一, 위 논문, 95-96쪽 및 朴贊勝, <韓末 驛土·屯土에 있어서의 地主經營의 強化와 抗租>《韓國史論》9, 1983; 金度亨, <大韓帝國期の 改革事業과 農民層動向>《韓國史研究》41, 1983 참조.

26) 柳洪烈, 앞 논문, 515-516쪽.

27) 《皇城新聞》, 광무 5년 5월 28일조.

28) 위 책, 광무 5년 12월 27일조.

29) 위 책, 광무 5년 4월 16일조, 論設 참조.

30) 朴贊勝, 앞 논문, 305-309쪽 참조.

주구가 온존되던 상태에서 중간 수탈·착취자만 오히려 증가된 셈이 되었다.

이처럼 제도적·자의적 수탈이 가중되던 객관적 상황에서 1898년에는 왕실의 재정을 주관하는 內藏院이 설치되어 잡세를 주관, 1899·1900년에 光武査檢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내장원에서는 그 관할도서인 제주도에도 捧稅官 姜鳳憲을 파견하여 각종의 세원조사와 징세를 합은 줄론 목사 이하 관리들도 규찰하게 하였다. 그리고 1901년 초부터는 度支部 훈령으로 지세를 조사하여 징수하는 임무까지 봉세관이 겸임함에 따라, 도민들은 중앙의 혹독한 조세정책에 편입되었다.³¹⁾

봉세관 강봉헌은 제주도에서 全權을 행사하면서 징세가 가능한 거의 모든 토지와 산물을 조사하여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였다. 그 한 예로 봉세관은 논 1斗落에 10兩의 賭租를 부과하였다.³²⁾ 규장각에 있는 稅納案을 볼 것 같은데, 1900년 전후 여타 지역의 公土 賭錢이 보통 3兩 내외였고 光武査檢 때 1두락에 평균 3兩을 부과하였던 것에 비해, 이는 무려 3배정도나 加賭된 무거운 액수였다. 제주도의 농업생산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실정이었으므로, 이같은 賭稅額은 기존 조세에 대한 濫徵·疊徵 그리고 각종 산물에 대한 濫執이 추가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제주도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양이었다.

또 봉세관은 종래 도민들이 保有하고 있던 耕作權·舍畜權·租稅徵收權·都買權 등에까지 간섭하여 임의로 移定하거나 천주교인에게만 맡겨 중간착취를 하도록 방조하였다.³³⁾ 이는 기존의 토지보유구조와 향촌질서를 재편성시키는 것이었다.

31) 金允植, 앞 책, 광무 5년 4월 12일조 참조.

32) 이때 姜鳳憲이 조사한 내용은 《濟州·大靜·旌義郡各公土調査成冊》과 《濟州牧三郡各浦魚基魚網稅及魚鹽口文成冊》, 《濟州牧三郡各公地松木雜木調査成冊》으로 되어 있어 稅原調査가 얼마나 철저했고 가혹했는지 알 수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각종의 公土稅가 14,888兩 정도, 각종의 浦稅가 7,355兩, 木價가 2,134兩 정도였다.

33)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全羅南北來案》, 1901년 6월 2일자 濟州牧使李在護報告 第1號; 《皇城新聞》, 광무 5년 6월 22일조;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앞 책, 館第11號의 별지 第1回報告와 柳洪烈·朴廣成·金玉姬·鄭鎮珏·姜昌一의 앞 논저 참조.

그런데 이같은 봉세관의 독주가 가능하였던 배경은, 첫째 봉세관의 稅弊는 근본적으로 농민 대중을 도의시키고 국가와 왕실재정만을 위한 광무정권의 조세정책에서 기인하였다. 따라서 봉세관의 존재는 反農民的인 국가권력을 매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더 폭력성을 나타낼 수 밖에 없었다.

둘째 제주도는 대부분의 토지가 국유지였으므로 지대수취의 강화, 또는 농민들의 경작권·사유권등에 대한 자의적 탈취, 그리고 각종 산물에 대한 執稅가 용이한 토지보유구조였다. 때문에 전도민에 걸친 봉세관의 봉건적 수탈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셋째 지방관을 감독할 수 있고 조세업무를 장악한 봉세관의 지위는 실질적으로 지방관보다 비교우위에 있었다. 이것이 종래 국가권력의 전횡이 가능했던 통치·재정구조와 결합되면서 한층 더 극렬히 표출될 수 있었다. 이런 만큼 현지에서 이를 목격한 金允植도 이에 대한 도민들의 저항은 필연적인 것으로 여길 정도였다.³⁴⁾

3. 천주교 문제와 제주도에서의 敎弊

19세기 프랑스의 제국주의적 침략은 천주교의 교세확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었다. 1886년 韓佛修好條約과 1896년 敎民條約 등으로 선교와 신앙의 자유를 획득한 프랑스 천주교는³⁵⁾ 1900년을 전후로 특권을 향유하는 정치세력으로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주권을 위협하는 제국주의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다.³⁶⁾

실제 구한말 천주교는 국가 내의 국가와 같은 조직체계(信徒—神父—主教—佛國公使)를 통해 치외법권적인 특권을 누리면서 포교활동을 피하였다. 이 과정에서 천주교는 선교에 위배되는 전통적인 가치체계나 토착종교 또는 반대세력을 전면 부정하는 측면이 있었다. 또한 프랑스 신부들은 그들의 치

34) 金允植. 앞 책, 광무 5년 5월 9일조.

35) 崔鍾庫. 〈韓國에 있어서 宗教自由의 法的 保障過程〉《敎會史研究》第3輯, 1981, 참조.

36) 姜昌一. 앞 논문, 33쪽. 이 논문은 이같은 인식하에 舊韓末 천주교 문제를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참조를 요한다(11-44쪽).

의법권과 영사재판권을 일반 신도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하여 통치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였고 이에 의탁하여 그 특권과 비호를 요하는 入敎者(소위 無賴輩・漏網匪類・負罪亡命者・不良者 등)들에 의해서 갖가지 불법적인 행동이 자행되었다. 이들은 일반인의 전담과 錢穀은 물론 광산・어장등을 수탈하는가 하면, 지방관의 행정에까지 간섭하였고 인명을 살상하고서 성당으로 피신하기도 하였다.³⁷⁾

구한말 자료에 의하면 이같은 현상은 주로 소위 敎弊로써 반영되고 있었다. 천주교가 전래된 이후 반봉건의식이나 사회개혁의식과 결부되어 사회변혁에 기여한 바도 있으나, 이에 수반되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교폐는 민중들로 하여금 反西敎意識을 자극하여 저항을 초래하였다.³⁸⁾ 성당을 파괴하는가 하면,³⁹⁾ 심지어 프랑스 신부들에 까지 생명의 위협을 가하기도 하였고⁴⁰⁾ 집단적으로 等訴하여 교폐를 혁파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⁴¹⁾ 斥西敎의 움직임도 일어났다.⁴²⁾ 더욱이 이같은 敎人과 非敎人과의 갈등 대립은 敎案으로 비화되기도 하였다.⁴³⁾ 즉 천주교세력은 통치권의 직접 행사권자인 지방관료에겐 통치권 행사의 방해자로서, 일반 민중에게 새로운 형태의 침탈적인 특권 세력으로서, 전통적인 의례나 토착종교 신봉자에게는 문화적・종교적 침략자로서 규정되어 적대적인 대립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⁴⁴⁾

37) 《皇城新聞》, 광무 3년 9월 30일・10월 13일조, 광무 4년 12월 5일조, 광무 5년 3월 22일・7월 8일・9월 6일조, 광무 6년 7월 23일조, 광무 7년 2월 12일・6월 30일조 참조.

38) 「The underwoods, who were travelling in the interior, heard of a great anti-christian plot」 Fred H. Harrington, *GoD Mammon and the Japanese*, 1966, 115쪽.

39) 《皇城新聞》, 광무 3년 9월 30일조 참조.

40) 위 책, 광무 5년 4월 2일조 및 《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7권, 광무 5년 10월 19일조 참조.

41) 《皇城新聞》, 광무 6년 2월 28일조 논설 참조.

42) 위 책, 광무 4년 6월 16일・9월 24일조 참조.

43) 그 대표적인 예로 1899년 江景浦에서의 相爭, 1900년 洪州에서의 相詰起鬧, 1901년 智島에서의 분규, 1903년의 海西・牙山敎案을 들 수 있다. 舊韓末敎案에 대해서는 李元淳, 〈朝鮮末期社會의 對西敎問題 研究—敎案을 中心으로 한—〉《歷史敎育》15, 1973년을 참고할만 하나 당시 국내의 사회적 모순으로 인한 사건 정도로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본 것 같다.

44) 姜昌一, 앞 논문, 39-40쪽 참조.

이같은 객관적 정세하에 제주도에서도 당시의 보편적인 교세가 성행하였고 여기에 제주도의 특수성이 결합되면서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제주도에 천주교가 본격적으로 전래된 것은 1899년 5월부터로 1901년 봄에는 2년간의 포교로 242명의 영세자와 6,7백명의 예비신자를 배출하는 놀라운 양적 교세확장을 이루었다.⁴⁵⁾ 이는 당시 제주도의 인구가 약 4만 명이었으므로 거의 2.5%에 해당하는 비율이나, 入敎의 동기와 목적은 대부분 순수한 종교적 차원이라기 보다 치외법권적인 특권을 누리는 신부를 배경으로 그 특권과 보호·원조를 향유하기 위한 것이었다.⁴⁶⁾

그러므로 천주교에 입교한 교인들은 자신들도 곧 法國人이라는 치외법권적 명의하에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채 갖가지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으며 심지어 私刑까지 마음대로 시행하였다.⁴⁷⁾ 이에 제주도 사회가 천주교인들에 의한 무법천지로 전락됨에 따라, 지방관은 통치 불능의 상태에 빠졌고 일반도민들은 천주교인들의 전횡으로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였다.⁴⁸⁾

교인들의 독주는 기본적으로 치외법권적인 프랑스 신부의 존재와 제주도의 경제적 전권을 장악한 봉세관과의 결탁이라는 조건 속에서 더욱 가속화된 양태로 전개되었다. 신부는 천주교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방관 내지는 비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치외법권을 남용하여 官事에까지 간섭함에 따라 제주도민의 反天主教意識을 자극하였다.⁴⁹⁾

또한 봉세관도 지방관을 비롯한 도민 上下層 모두에게 적으로 설정됨에 따라, 자신의 신변확보와 업무수행을 위해 도민들로부터 배타적임으로써 자

45) 제주도에서의 천주교 전래과정과 교세확장에 대해서는 金玉姬, 앞 책, 22-34쪽 참조.

46) 姜昌一, 앞 논문, 90-93쪽 참조.

47) 이에 대한 구체적 실상은 《皇城新聞》, 광무 5년 5월 2일조; 《全羅南北來案》, 앞 보고서;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앞 책, 館第11號의 별지 第1回報告 참조.

48) 「且論西敎人 假稱聖學 誣惑愚民 率聚徒黨 橫行邑村 非理奪物 非法毀獄 官不施令 民不保命」(三郡都民等等狀),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앞 책, 館第13號의 부속서.

49) 《皇城新聞》, 광무 5년 6월 21일조; 《具神父書簡(No. 16)》, 金玉姬, 앞 책, 자료편; 金允植, 앞 책, 광무 5년 5월 18일조 참조.

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유배죄인⁵⁰⁾ 및 교인과 결탁할 수 밖에 없었고 그 반대급부로서 사음권·조세징수권·도고권과 같은 경제적 이권을 교인들에게 주는 상호보완관계에 있었다. 이리하여 교인들은 프랑스 신부와 봉세관이라는 두 개의 절대권력을 바탕으로 법적·경제적 특권을 향유하는 새로운 수탈자·침략자로서 존재할 수 있었다. 이는 역으로 일반 도민들로 하여금 천주교 자체에 대한 반감은 물론 반의세 저항을 초래할 소지를 안고 있었다.

더욱이 반천주교의식을 더 한층 자극한 것은 기존의 가치체제와 토착종교를 부정하였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육지와 매우 다른 토착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민간신앙이 매우 성행하였다. 그러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파괴하는 外來宗教인 천주교는⁵¹⁾ 일반 도민들에게 하나의 문화적·종교적 침략자로서 받아들여져 반천주교의식을 한층 강화시켰다.⁵²⁾

따라서 통치권을 위협받는 관리들은 관리 대로, 향촌에서의 기득권을 빼앗긴 鄕任層은 향임층 대로, 농·어업 기반을 위축당한 일반 민중은 이들 대로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모든 면에 교인들의 직접적인 폐해가 미치었기 때문에, 도민들은 천주교를 공동의 적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봉세관·천주교인·유배인이 결합되고 지방통치세력·일반 민중들이 결합되는 형태로 침략·침탈적인 外來勢力과 防衛的인 도민간의 적대적인 대립축이 형성되어 나아갔다.⁵³⁾

그리하여 1901년 4월 초에는 교인들의 교폐가 날로 심화되자 위로부터의 저항형태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곧 大靜郡 상층민 중심으로 조직된 상무사

50) 당시 流配罪人의 등향에 대해서는 朴廣成, 앞 논문, 74-79쪽 참조. 1901년 초 제주도에는 10명의 유배인이 있었는데, 이중 李容鎬·崔亨順·李範瞻·張允善은 민怨을 사고 있었으므로 천주교에 의탁하여 자신들의 지위를 도모하거나 신변보호를 위해 入教하였으며 5월 民亂期에는 이들의 독선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51) 《Mutel 報告書》, 金玉姬, 앞 책, 자료편; 《카톨릭研究誌》史話, 1935년 10월 호;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앞 책, 館第11號의 별지 第1回報告, 暴徒蜂起ノ原因 참조.

52) 姜昌一, 앞 논문, 110-116쪽 참조.

53) 위 논문, 96-98쪽 및 이기석, 앞 논문 참조.

였다.⁵⁴⁾ 이 상무사는 대정군수 蔡龜錫과 鄉長(座首) 吳大鉉 등을 중심으로 교폐를 방지하자는 취지하에 신설된 자위조직체였다. 상무사가 대정군 상층민 중심으로 조직된 것은 이들이 장악하고 있던 기존 鄉權에 대하여 외래세력인 봉세관과 천주교가 위협을 가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위책으로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상무사는 교폐에 대한 능동적·조직적인 저항체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그 주요목적이 교폐를 방지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의 충들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1901년 항쟁이 일어나기 전, 1898년 봉기의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비록 일시적·비조직적으로나마 봉건적 수탈에 대한 저항의식이 표출되고 있었고 여기에 상무사와 같은 조직적인 반천주교운동이 나타나면서, 제주도는 심각한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Ⅲ. 民亂의 전개과정

1. 1단계 : 民會 · 籌賑期

1901년초 지방관의 탐학과 봉세관에 의한 수탈적인 조세수취구조의 재편으로 2중 3중의 착취를 당한 데다가 교인들의 불법행위로 제주도민들의 적대적인 갈등과 위기의식은 한층 고조되었다. 이런 상황하에서 1901년 5월초 대정군민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의 항거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민란이 발발하게 된 시점은 대부분 4월 29일경 반천주교운동을 해오던 商務社員 宋希洙에 대한 천주교인들의 구타사건이나,⁵⁵⁾ 5월 6일 천

54) 商務社의 구조와 성격에 대해서는 鄭鎮珩·金玉姬·姜昌一의 논저 참조. 그러나 商務社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사건의 책임을 商務社에 전가시켜 기록한 천주교측 자료에만 있어 그 실상을 파악하는데 의심의 여지가 있다.

5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앞 책, 館第11號의 별지 第1回報告, 暴徒蜂起ノ發端. 이 보고에는 사건 일자가 4월 5일로 되어 있다. 그러나 金泰能의 앞 논문, 325쪽과 《濟州道誌》, 345쪽에는 4월 29일로 되어 있다. 제반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구타사건은 민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일어나 대규모의 항쟁이 전개될 수 있는 전주가 된 것으로 보이는 바, 위 기록 일자보다 金泰能의 조사 일자인 29일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다.

주교인과 상무사원간의 충돌사건에⁵⁶⁾ 있는 것으로 보아 왔으나 재고의 여재가 있다. 오히려 그 시점은 5월 5,6일경 대정군민의 민會였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 근거로 첫째 5월 5,6일경 대정군민들이 呈訴를 통해 세폐를 혁파하고자 집단적으로 모여 관아에 들어간 것이 있었던 점을 들 수 있다.⁵⁷⁾ 둘째 5월 9일자 채구석의 보고서에 의하면,⁵⁸⁾ 근일 일어난 상무사원과 천주교인과의 분규는 겨우 진정되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4월말 송희수 구타사건이 민란의 직접적인 발단이 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셋째 5월 6일 상무사원과 천주교인과의 충돌사건 외에 이날 이미 대정군민 수백명이 群聚해 있었다고 하는데,⁵⁹⁾ 대정군민의 모임은 시차상으로 볼 때 충돌사건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동일 일어난 별개의 상황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⁶⁰⁾ 따라서 봉기의 시점은 5월 5,6일경 대정군민의 민회에서 요구해야 한다.⁶¹⁾

56) 金允植, 앞 책, 광무 5년 5월 8일조. 사건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천주교인인 副吏房 金玉珥이 鄉長 吳大鉉의 姣妾을 간음한 사건으로 대정군수는 兩人을 笞刑에 처한 후, 김옥돌은 수감하고 오대현은 석방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천주교인 進士 金秉鉉은 50여명의 천주교인을 대동하고 와서 옥문을 부수고 김옥돌을 구출한 후 상무사원들을 잡아갔다. 상무사원 역시 증도에서 동료들을 구출한 후 천주교인 7,8명을 구타해 그중 2명을 빈사지경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사건이 전개되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57) 「被告吳大鉉……今年陰曆三月十七八日間(1901년 5월 5,6일간 :筆者) 該民人等 謂以稅弊難堪 將呈訴厘正次 會于郡底」《官報》, 1901년 10월 18일, 司法平理院 質稟書. 「被告李在守」의 檢案에는 民會 일자가 3월 望間으로, 「被告姜遇伯」의 檢案에는 吳大鉉의 姣妾事件으로 천주교인과 상무사원이 충돌한 날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일자가 제시된 吳大鉉의 檢案을 따랐다.

58) 「近日에 天主教人이 僅爲和解이오나」《全羅南北來案》, 앞 보고서.

59) 「聞大靜民數百名群聚 號商務會社 打天主教人七名 急報入來」《續陰晴史》, 광무 5년 5월 6일조.

60) 그 한 증거로, 「被告姜遇伯……郡民等 以稅弊事呈訴厘正次 入于本郡 適其時 鄉長吳大鉉與副吏房金玉珥有奸淫事相關之端」《官報》, 앞 質稟書라고 하는데, 대정군민의 呈訴와 오대현 사건은 별개의 것이다.

61) 이 大靜郡 民會의 실상에 대해서는 자료의 한계성으로 구체적인 성격을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이 民會와 유사한 鄉會가 18세기 중엽 이래 大同意識을 바탕으로 饒戶層을 중심으로 한 “民”의 자치조직으로써 향촌사회에서 운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는 民亂이라는 反封建運動으로 발전하는 조

물론 5월 6일 천주교인과 상무사원간의 충돌사건은 상무사가 민회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세폐와 교폐의 혁파라는 운동방향도 더욱 가시화 되었다. 즉 상무사는 처음부터 민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지는 않았을지라도, 충돌사건 이후 민회에 동참하여 지도성을 발휘하고 그 세력과 조직을 민회에 접맥시키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정군민 역시 향촌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과 그 조직을 활용하는 것은 합법적인 呈訴運動 차원인 민회가 더욱 합법성과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대정군 향장이었던 오대현과 月坪里 里綱이었던 姜遇伯을 적극 장두로 추대한 것이다.

이리하여 5월 8일경에는 대정군 石面民들이, 그 다음날에는 左面·中面民들도 通文을 돌려 聚會하였고 정의군 好近·法遷 및 제주군 龍水里 등지의 주민도 참여하였다.⁶²⁾ 이 민회에서는 봉세관의 세폐와 천주교인들의 교폐를 성토함은 물론 제주성으로 가 이들 폐해를 시정해 줄 것을 목사와 봉세관에게 等訴하기로 결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민회에서는 오대현을 西來民狀頭, 강우백을 東來民狀頭로 삼아 두 길로 나누어 제주성 서쪽·동쪽 방향으로 향하였다.⁶³⁾ 그후 다른 도민들도 다투어 모여들면서 12일경에는 오대현·강우백·吳姓人(旌義郡民의 狀頭)을 장두로 하여 대정군 民會所를 출발한 대열이 제주군 翰林洞에 도착하는 민회의 발전이 이루어지었다.⁶⁴⁾

이렇게 발전된 민회의 운동노선은 어디까지나 집단적인 등소를 통해 운동

직체가 되었던 것으로 보아(安乘旭, <朝鮮後期 自治와 抵抗組織으로서의 鄉會>《聖心好大學 論文集》18, 1896 및 <19세기 壬戌民亂에 있어서의 「鄉會」와 「饒戶」>《韓國史論》14, 1986 참조), 이 민회의 일단의 성격을 추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高宗朝 民亂 대부분도 그 첫단계로써 民會가 소집되고 이곳에서 투쟁대상, 운동방향, 그리고 지도부 인준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拙稿, <高宗朝 民亂研究>《龍巖車文燮博士華甲記念史學論叢》, 1989, 691쪽).

62) 吳大鉉·姜遇伯이 狀頭로 나서는 과정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불명확하다. 《官報》에는 5월 5, 6일경 대정군민의 민회가 시작된 2일쯤 뒤부터, 《全羅南北來案》에는 5월 9일경부터, 《續陰晴史》에는 5월 12일경에야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았을 때 약간 무리한 추론인지 모르지만 吳大鉉·姜遇伯은 민회가 성대해진 5월 8, 9일 이후부터 장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63) 《全羅南北來案》, 위 보고서.

64) 金允植, 앞 책, 광무 5년 5월 9·12일조.

을 관철시키려는 온건적·합법적·비폭력적 차원에 있었다. 한 예로 제주목사 겸 제주군수였던 金昌洙가 5월 12일 한림동 민회소에 찾아가, 봉세관이 이미 5월 10일 出陸하였고 民願에 따라 일체의 폐물 상부에 보고하여 원과 함은 물론 교폐를 통금할 것이니 즉시 해산하라고 하였을 때, 會民들은 5월 16일 黃沙坪에서 혁파사항을 公議·等訴한 뒤 관에서 이를 지키겠다고 문서로써 확약해 준다면 해산하겠다고 하였다.⁶⁵⁾ 이것만 보아도 민회가 무력을 지양한 합법적인 온건노선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방법은 1898년 官을 상대로 무력에 의존하였다가 비참한 최후를 가져온 경험의 반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⁶⁶⁾

그리고 이 민회·등소의 성격은 봉진적인 수탈적 조세수취구조의 변혁에 1차적인 주안점을 둔 반봉건운동이었고 천주교 문제는 부차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5월 9일경 대정군수 채구석이 민회소를 찾아가 그 원인을 물었을 때 주로 세폐를 호소하였다.⁶⁷⁾ 또 5월 12일 목사에게 올린 諸民人等 等訴의 내용이 주로 봉세관의 雜稅濫執과 교인들의 侵逼이었지만 세폐에 더 비중을 두고 있었다.⁶⁸⁾ 등소의 대상도 목사와 봉세관이었다.⁶⁹⁾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도민들은 봉세관과 이를 매개로 한 교인들의 경제적 수탈을 더욱 심각한 모순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5) 金允植, 앞 책, 광무 5년 5월 13일조 및 《全羅南北來案》, 앞 보고서.

66) 《濟州道誌》, 앞 책, 346쪽.

67) 「而今此已納洞布外家間更査也와 有主楊田之出舍音耨耕也와 納稅公土之更執也와 茅草與青草之執稅也 天主教人之橫行侵逼也 諸壤日甚에 不能之保야야 今將齊訴于本牧與捧稅官호야」 《全羅南北來案》, 앞 보고서.

68) 위 보고서, 이 等訴의 조항은 모두 12조항이었다. 이중 捧稅官과 이를 매개로 한 경제적 수탈이 8건이고 교인의 사회적 불법행위가 4건이다.

69) 그밖에 「商務會民雖云與教民構軋 其實苦於捧稅官之弊」 《續陰晴史》, 광무 5년 9월조라고 하여, 金允植은 大靜郡民의 불기가 捧稅官의 폐에 더 원인이 있다고 하였다. 吳大鉉·李在「樹」·姜遇伯도 大靜郡民의 민會가 稅幣의 呈訴厘正에 있었다고 하였다(《官報》, 광무 5년 10월 18일, 司法 平理院 實稟書). 또한 당시 제주도에 파견되었던 宮內府 고문관 W·F 샌즈도 불기의 주원인이 천주교도에 대한 반감이라기 보다는 과중한 세금 징수에 있었다고 하였으며 {W·F 샌즈著·김훈 譯, 《조선의 마지막 날》(未完, 1986), 237쪽}, 그리고 민會의 等訴 내용이 조세문제에 더 비중이 쏠려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단계의 민會는 反天主教意識의 표출이라기 보다 反捧稅官을 통한 反封建의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프랑스 신부와 교인들의 대응전략은 이 민회를 어디까지나 천주교를 타도하기 위한 반란으로 규정, 會民을 暴徒로 간주하고서 무력에만 의존하려 하였다. 천주교측은 민회 초기부터 각지의 교인 천여명을 소집하고 총기등을 준비하였는가 하면 5월 10일에는 중앙으로 구원요청을 하기도 하였다.⁷⁰⁾ 게다가 천주교측은 이번 사건의 최선의 해결책으로 폭도의 두목을 잡아들여 선제제압을 해야 한다는 방안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천주교측은 5월 14일 계획대로 민회 장두 내지 적극가담자들(오대현을 비롯한 6명)을 잡아들였는가 하면, 인명을 살상함은 물론 대정·제주군의 무기고를 열어 증무장하기도 하였다.⁷¹⁾

이 일련의 사건은 프랑스 신부가 다른 농민봉기 처럼 장두만 체포하면 자연스럽게 해산할 것으로 판단하고서 안일하게 자행한 일이었다.⁷²⁾ 민회의 실상을 무시한 천주교측의 무력적 강경대응은 오히려 도민들로 하여금 동소를 통한 온건노선에서 무력투쟁에 의거한 강경노선으로 급선회하는 새로운 운동의 국면을 초래하여 교인들에 대한 전면투쟁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⁷³⁾

2. 2단계 : 3郡民의 總蜂起와 武力抗爭期

5월 15일, 民軍은 프랑스 신부가 지휘하고 있는 濟州城內 무장교인들을 상대로 전투적인 체제정비를 강화해 나갔다. 民軍은 西陣 狀頭 李在樹⁷⁴⁾와

70) 金允植, 위 책, 광무 5년 5월 9·10일조 참조.

71) 《濟州事件(No. 56)》, 金玉姬, 앞 책, 자료편; 金允植, 위 책, 광무 5년 5월 15·17일조; 駐韓日本公使館記錄, 〈三郡都民等狀〉; 앞 책, 館第13號의 부속서; 《全羅南北來案》, 앞 보고서 참조.

72)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앞 책, 館第11號의 별지 第1回報告.

73) 「此擾背紫이 一則擄稅官也오 二則天主教人也오 以衆民齊訴之事로 釀成大亂者는 專是天主教人也라」 《全羅南北來案》, 위 보고서.

74) 이재수의 “수” 한자표기는 자료에 따라 각기 달라 《耽羅紀年》에는 守, 《續陰晴史》에는 秀, 외교문서에는 洙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재수 자신이 일본인에게 보낸 편지(駐韓日本公使館記錄, 앞 책, 館第13號의 부속서)에서는 樹라고 기록하였다. 여기서는 비록 이재수의 편지가 筆寫本이기 때문에 필사하는 과정에서 한자어를 잘못 기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본인의 편지라는 점에 사료적 가치를 두어 “樹”라 하였다.

東陣 狀頭 姜遇伯의 지도하에 17·8일경에는 제주성 남문 밖 황사평을 중심으로 포진하여 교인과의 공방전에 들어갔다. 이 때부터 교인에 대한 처형이 매일 시작되었다.⁷⁵⁾

이때 민군은 20일에는 東·西·南·北陣, 24일에는 東·西·南陣, 27일에는 東·西陣으로 分陣하면서 제주성에 대한 철저한 포위작전 내지 봉쇄작전을 조직적으로 수행하였다.⁷⁶⁾ 이같은 무력항쟁은 3군민이 총봉기하여 자발적 능동적으로 참여한 데다가, 洞任과 같은 향촌사회의 실무책임자와 그 조직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⁷⁷⁾

5월 28일 민군은 5월 23일부터 제주성내의 주민들이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봉기하여 內應한 것에 힘입어 제주성에 無血入城하였다.⁷⁸⁾ 입성한 민군은 성내에 있던 교인들을 처형하여 민군에 의해 죽은 교인수가 거의 300여명에 이르게 되었다.⁷⁹⁾ 특히 초강경적인 입장을 보인 서진에서는 신부를 체포하여 천주교인 명단을 목록하였으나 얻어내지 못한 채 풀어주기도 하였으며 성당과 예수상을 파괴하기도 하였다.⁸⁰⁾

그런데 이 과정에서 5월 18·21일 양차에 걸친 목사와 대정군수의 중재 시도로 講和의 여지는 있었다. 그렇지만 민군은 제반 폐막에 대한 확실한 보증과⁸¹⁾ 교폐가 심했던 자들⁸²⁾ 및 1898년 봉기 때 반농민적이었던 봉건반동

75) 金允植, 앞 책, 광무 5년 5월 15~18일조 참조.

76) 위 책, 광무 5년 5월 20·24·27일조 참조.

77) 「民黨四面聚會 向城先聲甚大……概不下數千 守城教人實不過數百」·「大抵此次之舉 三邑皆動 處處屯聚者甚多」·「聞黃沙坪民分四陣向四門……四處民兵各數千」·「各村里民爭來輸餉飯餅·雞豚·酒食·相續不絕……民兵不知幾千」《續陰晴史》, 광무 5년 5월 16·17·20·21일조.

78) 위 책, 광무 5년 5월 23·25·28일조 참조.

79) 위 책, 광무 5년 5월 28일, 6월 7일조;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앞 책, 館第11號의 별지 第1回報告; W·F 샌즈, 앞 책.

80) 「西陣招神父教堂 使覓納教徒錄名冊子 蓋欲依錄搜捕 無遺盡殺也 覓冊子不得放神父還……教堂雖有保護之令 各人看守 門破壁壞 舍中什物俱空 耶穌木像一臂折落」《續陰晴史》, 광무 5년 5월 29일조.

81) 「其狀頭曰 本與郡使道相約 但革民弊 則自可散會 亦不敢行悖妄害一人」·「民有一分回心之意曰 然則民等將舉諸般弊廢 搆入等狀文字 觀其題下而爲之進退矣」《續陰晴史》, 광무 5년 5월 18·21일조.

82) 「狀內略云, 民人等初以擇稅官事 欲相率籲寬 教人無端起釁……教人中作弊尤甚四五人 指崔亨順·羅雲卿·朴田大·李基善 捉送陣前 則當解散 不然則將馳入陣

세력에 대한 처단을⁸³⁾ 해산조건 내지 운동목표로써 설정하고 있었다. 민군은 교인들에 대한 저항의식과 戰意가 굳건하였기 때문에⁸⁴⁾ 이같은 운동목표의 해소 없이는 해산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반해 천주교측은 5월 17일 프랑스 신부와 최형순이 교인들을 이끌고 廣陽村에 모여 있는 민군에게 먼저 발포하여 13여명을 사살하였다. 이에 따라 양자간의 대립은 더욱 악화되었다.⁸⁵⁾ 또 5월 20일 신부는 유배적인인 張允善을 木浦로 보내 프랑스 군함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는 민군을 더욱 자극시켰다. 18·21일 목사와 대정군수의 중재 시도에 있어서도, 신부는 민군의 요구에 대해 무조건 해산할 것만 강요하였으므로 협상의 여지가 없었다.⁸⁶⁾ 더욱이 5월 23일부터 민군이 성 공격을 한층 강화하면서 성내의 주민들로 하여금 봉기하여 성문을 열도록 압력을 가하자, 신부는 14일 체포한 오대현 외 12명을 석방하여 회유책을 쓰거나 프랑스 군함이 도착할 때까지 사태를 무마시키는 지연작전이라는 고시책만 구사하였다.⁸⁷⁾

따라서 양측의 극한 대립과 비참한 결과는 거의 필연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프랑스 신부들이 자신들의 포교과정에서 파생된 부작용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거나 종교적 차원에서 수습하려 하지 않고 무기에 의한 위협 및 자국의 무력개입을 통해 해결하려 한 결과, 항쟁을 더욱 확대시켰다.⁸⁸⁾ 즉 도민들은 교폐를 봉세관의 봉건적 수탈을 매개로 한 부차적 모순으로 인식하였던 1단계에서, 2단계에서는 천주교세력을 봉건적 수탈세력 외에 하나의 침탈적인 외세로 간주하고 3군민이 총봉기하여 무력항쟁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中 以教爲名者一併陷沒云云」《續陰晴史》，광무 5년 5월 22일조.

83) 「揚榜四門 其一 擗稅官之弊 其二 教弊 其三 爲戊戌倡義之罪 此房星七餘黨 致憾於宋大靜(斗玉)·洪旌義(在晋)也」《續陰晴史》，광무 5년 5월 28일조.

84) 《全羅南北來案》，앞 보고서 참조.

85) 金允植, 앞 책, 광무 5년 5월 17일조 참조.

86) 위 책, 광무 5년 5월 18·20·21·22·26일조 참조.

87) 위 책, 광무 5년 5월 23·25일조 참조.

88) 鄭鎮珩, 앞 논문, 87쪽.

3. 3단계 : 中央政府軍과의 대치와 再等斯期

5월 31일 270명의 프랑스해군과 새로 부임하는 신임 목사 李在藤, 그리고 도민의 원망의 대상인 신임 대정군수 강봉헌등을 태운 두 척의 프랑스 군함이 제주도에 입항하였다.⁸⁹⁾ 또 6월 2일에는 鎭衛隊 江華兵丁 100명과 중대장 洪淳明, 宮內部 雇問官 미국인 山島(W.F. Sands)가 급파되었고 일본 군함까지 출동함에 따라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⁹⁰⁾ 즉 한 국지적 사건이 국가문제·국제문제로까지 비화되었고 이에 따라 민군에게도 역시 어렵고 중대한 대응조건이 형성되었다.

프랑스 군함의 계독은 6월 1일 신임 목사로 하여금 전대정군수 채구석을 비롯한 민군 장두들을 포박하도록 위협하였는가 하면, 포박하지 않으면 프랑스 군인들이 직접 초토하겠다고 하여, 목사는 마지못해 동·서진의 장두들을 捕納하라는 傳令을 띄울 수 밖에 없었다.⁹¹⁾

또 프랑스 군함의 퇴거 알선을 위해 급파된 미국인 고문관 산도의 주선으로 6월 2일 일단 철수하였다가 9일 재차 입도한 프랑스 군함은 또 다시 목사와 고문관에게 장두들을 체포하여 엄중히 처분하도록 위협하였다.⁹²⁾ 이같은 프랑스 군함의 제국주의적 무력시위와 이에 따른 장두의 체포 전령은 이후 도민들을 더욱 자극하여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⁹³⁾

이에 반해 신임 목사와 중앙 정부군의 중대장은 중앙정부의 명에 따라 효유에 의한 자진해산이라는 온건적인 진압책,⁹⁴⁾ 즉 先 解散, 後 民弊革罷라는

89) 金允植, 위 책, 광무 5년 5월 31일조와 金玉姬, 앞 책, 148-151쪽 참조.

90) 金允植, 위 책, 광무 5년 6월 2일조.

91) 위 책, 광무 5년 6월 1일조.

92) 위 책, 광무 5년 6월 9일조;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앞 책, 館第13號의 별지 第2回報告.

93) 「敎徒之餘存者 依法艦之勢……義氣堂堂 人皆惡之」·「屢諭西陣 使之解散 更勿殺害人命 頗違所言 但以捉納狀頭之說 各村民復大動」·「聞西陣在涯月鎮 以日前狀頭捉納之令 團結不散」《續陰晴史》, 광무 5년 6월 14-16일조; 「法國軍艦一時蒼泊 蘭島蒼生自分必死」《三郡大小民人等等狀》,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위 책, 館第13號의 부속서.

94) 金允植, 위 책, 광무 5년 5월 31일, 6월 2·5·9일조; W·F 샌즈, 앞 책, 236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위 책, 館第13號의 별지 第2回報告.

조건으로 동·서진 민군과 협상하면서 해산을 종용하였다. 중앙 정부군의 실권을 쥐고 있던 미국인 고문관의 경우는 무력진압을 희망하였다. 그렇지만 효유 해산책이 국왕의 명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그도 이에 준할 수밖에 없었다.⁹⁵⁾

그러나 이 진압책은 민군을 일단 해산시킨 뒤 장두들을 체포할 여지가 그 이면에 있는 데다, 민군의 운동목표였던 세폐와 교폐에 대한 확실한 보장과 장두들을 체포하지 않겠다는 약속 없이 민군은 무조건 해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큰 진전을 볼 수 없었다.⁹⁶⁾ 특히 민회가 개최된 직후 육지로 도망갔다가 다시 대정군수로 임명된 봉세관 강봉현의 부임은 도민들을 더욱 자극하였다.⁹⁷⁾ 또 장운선·최제보 등이 6월 2일 목포에서 돌아온 뒤 민군을 도륙할 것이라는 풍설이 나도는가 하면, 그 동안 교폐가 심했던 교인들의 다수가 생존하고 있었으므로,⁹⁸⁾ 민군은 세폐와 교폐의 주범인 이들이 투쟁대상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이상 해산할 수 없었다.

동·서진 민군은 목사와 진위대 증대장으로 대표되는 중앙정부와 협상을 도모하면서도, 무장을 한 채 계속 저항을 하는 한편 합법적인 공간을 활용하여 等訴를 통해 운동목표를 실현하고자 하였다.⁹⁹⁾ 민군은 제주성에 입성하기 전 중앙정부군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3군에 통문을 띄워 방어 영격의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고¹⁰⁰⁾ 6월 초순 수차례 통문을 발하여 漏網敎人을 체포하도록 하였다.¹⁰¹⁾

95) W·F 샌즈, 위 책, 238-239쪽; 金允植. 위 책, 광무 5년 6월 5일조.

96)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앞 책, 館第13號의 별지 第2回報告.

97) 「聞姜鳳憲差大靜而來 皆切齒以死爲限曰 吾輩寧早死於大砲之下 不可盡死於此人之手」《續陰晴史》, 광무 5년 6월 2일조.

98) 「如崔濟普兄弟·高伯龍三父子·金守石·李基先·朴田大等 皆行悖貽弊 邑村皆曰可殺者 幸得漏網 嘔目揚臂 自謂復讐之秋……而追聞崔濟普等新入 揚言亂民屠戮之說 諸民疑懼 更無散會之意」《續陰晴史》, 광무 5년 6월 3일조.

99) 이때 民軍은 兪崇·죽창·갈·일본검 등으로 무장한 채 군율이나 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었으며 東·西陣의 주력부대가 각각 1,500명 2,000명 정도였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앞 책, 館第13號의 별지 第2回報告).

100) 「蓋民黨未入城之時 聞京兵將來 發通三邑百姓 六十以下十五以上 盡必調發 來赴州城 爲防禦迎擊之計 以是三邑大動 陸續聞令 而到中路 逢東·西陣分巡之行 率與俱行 幸不入城」《續陰晴史》, 광무 5년 5월 30일조.

101) 위 책, 광무 5년 6월 4·7 일조.

그렇지만 동·서진의 활동은 차이가 있었다. 동진은 제주성 근처에만 주둔해 있으면서 사태를 관망하고 목사에게 빈번히 해산 약속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진은 제주성 서쪽 지역을 巡行하면서 교인들을 찾아내 모두 처단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리하여 6월 7일 서진에서 교인 1명을 살해한 것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양측의 사망자 수는 모두 교인이 600여명, 도민이 20여명이나 되었다.¹⁰²⁾

또한 민군은 목사·중대장과의 협상과정에서 해산 권유를 어느 정도는 수용하여 해산엔 원칙적 합의를 한 듯 하나(특히 동진의 경우), 해산 조건으로 세폐와 교폐를 혁파함은 물론 이들 민폐를 자행한 봉세관 강봉헌을 비롯한 교폐가 심했던 잔존세력을 처단할 것과 도민들의 죄를 묻지않겠다는 확실한 보장을 요구하였다.¹⁰³⁾ 동·서진의 이같은 요구는 等狀을 통해 6월 5·6일 각각 목사에게 제출되었다.¹⁰⁴⁾

그 밖에 강봉헌의 죄를 성토하거나, 채구석을 대정군수로 유임해 달라거나, 또는 地稅·洞布 외에 모든 無名雜稅를 혁파해 달라는 등의 각계각층의 民狀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제주성내에 있는 장두들은 上京하여 중앙에 직접 고소할 계획을 도모하기도 하였다.¹⁰⁵⁾

102) 위 책, 광무 5년 6월 3·7일조. 교인 사망자 수는 《Mutel報告書》·〈The Disturbance on Quelpart〉《THE KOREA REVIEW》No. 12가 500~600명, 駐韓日本公使館記錄이 600여명(도민은 20여명), 《續陰晴史》가 540~650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皇城新聞》, 광무 5년 6월 17일조에는 양측 모두 각 300여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실제 정황과 비교해 볼 때 지극히 부정확한 숫자이다. 여기서는 당시 현지에서 조사·청취한 駐韓日本公使館記錄의 숫자를 따랐다.

103) 金允植, 위 책, 광무 5년 6월 1~7일조 참조.

104) 駐韓日本公使館記錄, 〈三郡都民等狀〉·〈三郡大小民等狀〉, 앞 책, 館第13號의 부속서. 그런데 어느 等狀이 각각 東·西陣 等狀인지는 불명확하나 후자가 西陣의 等狀으로 보인다. 전자는 중앙정부에의 요구사항을 천주교의 永絶과 봉세관 등의 放逐이라고만 간단히 제시한 반면에, 후자는 첫째 조세수취구조를 개선하여 무명잡세를 혁파하고 正稅(洞布·田結)만 징수함은 물론 봉세관의 특탈전을 推給할 것, 둘째 교인들을 색출하여 모두 의법처리할 것, 셋째 프랑스 신부와 성당을 撤送할 것, 넷째 봉세관을 폐지하고 제주도 세 군수가 자체 운용하여 상납하게 할 것을 청원하면서 이것이 掾弊節目으로 관철되면 즉시 해산할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합법적 운동에 대해 목사나 증대장은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는 처지였고 고식적인 해산 권유만 되풀이하였으므로 해결의 가능성은 희박하였다.¹⁰⁶⁾ 오히려 6월 9일경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자 동·서진의 태도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¹⁰⁷⁾ 특히 항상 타협적 자세로 해산할 여지가 있었던 동진 보다는 시종일관 강경한 태도로 운동의 주도권을 잡고 있던 서진의 경우 민폐 혁파와 누망교인들의 처결없이 해산이란 용인될 수 없었다.

4. 4단계 : 民軍의 解散과 事後問題

3단계에서 중앙정부는 효유에 의한 진압방법이 효과가 없게 되자, 察理使와 증원부대를 급파하고 이 사건에 유배죄인들이 깊이 관련된 점을 감안하여 이들을 移配하라는 조치를 내리는 등 적극적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하였다.¹⁰⁸⁾ 그래서 6월 10일에는 察理使 黃耆淵과 沁軍參領 尹喆圭를 비롯한 200명의 진위대와 13명의 순검이 제주도에 도착하였다.¹⁰⁹⁾ 진압책 역시 순검을 대동한 것이 장두들을 체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¹¹⁰⁾ 여타의 농민 봉기 진압방법에서처럼 장두를 최우선적으로 체포하여 해산시키는 방법이 었다.

尹參領은 도착 즉시 서진을 면담, 이 자리에서 서진은 민폐를 자행했던 잔존세력을 체포하면 해산하겠다는 요구를 하였고 윤참령은 다음날 민군이 모두 제주성내로 들어오면 民願에 따르겠다는 약속을 하였다.¹¹¹⁾ 이에 따라 윤참령은 6월 11일 먼저 서진에서 지목한 봉세관 강봉헌과 세폐·교폐가 심했던 자들, 그리고 천주교측으로부터 폭도의 두목으로 誤認받은 채구석을

105) 金允植, 앞 책, 광무 5년 6월 5·6·7일조 참조.

106)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앞 책, 館第13號의 별지 第2回報告.

107) 「昨日大隊長往諭西陣 終以教人爲惡者 尙未盡捕爲託 而無解散之意 午後本官與旌義守 又往曉諭 頑拒如前……夕聞西陣民通於城中 若不內應 必遭大過 城中畏兵丁不敢動 東陣民猶號令各村 推捉民人 諸村奉行」《續陰晴史》, 광무 5년 6월 9일조.

108) 중앙정부의 대책과정은 柳洪烈, 앞 논문, 529-530쪽 참조.

109) 金允植, 앞 책, 광무 5년 6월 10일조.

110)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앞 책, 館第13號의 별지 第2回報告.

111) 金允植, 앞 책, 광무 5년 6월 10일조.

체포하였다. 민군 역시 약속에 따라 제주성내로 들어갔다.¹¹²⁾

그러나 윤참령은 장두들을 즉시 구속한 뒤 무력으로 민군을 강제 해산시키었으며 6월 13일에는 장두들을 정식 수감하였다.¹¹³⁾ 이리하여 비록 그후 부녀자를 중심으로 장두들의 석방 내지 제주도에서의 공개재판을 격렬히 청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¹¹⁴⁾ 7월 18일 세 장두가 40여명의 관련자와 함께 서울로 압송되는 것을 끝으로 이 항쟁은 중앙정부에 의해 진압되고 말았다.

그렇지만 제주도민들은 이 항쟁을 통해 어느 정도는 운동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즉 6월 17일 찰리사는 약속에 따라 세폐 혁파에 관한 17條項을 傳命하였다.¹¹⁵⁾ 이 조항은 민군의 등소 내용이 무명잡세를 혁파하고 正稅(地稅·戶稅)만 징수하는 조세수취구조의 변혁을 꾀했던 점과¹¹⁶⁾ 1904년 경 제주도 조세가 地稅·戶布稅·漁船稅 정도였던 점에¹¹⁷⁾ 비추어 볼 때, 도민들의 요구가 나름대로 관철되어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찰리사는 목사·3군수·프랑스 신부와 더불어 교폐 방지를 제도적·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7월 2일 12조로 된 “敎民和議約定”을 체결하였다.¹¹⁸⁾ 이로써 도민들은 비록 민군이 요구한 성당과 신부의 철퇴를 관철시

112) 위 책, 광무 5년 6월 11일조, 이때 民軍의 생생한 상황은 W.F센즈, 앞 책, 242쪽 참조.

113) 위 책, 광무 5년 6월 13일조.

114) 위 책, 광무 5년 6월 14-17일조 및 《皇城新聞》, 광무 5년 7월 13일조 잡보(民擾更起).

115) 「察理使傳令革弊十七條 皆擇稅官弊也」《續陰晴史》, 광무 5년 6월 17일조. 察理使 黃善淵은 봉기의 원인이 稅弊와 敎弊에 있었던 것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皇城新聞》, 광무 5년 6월 21일조 별보). 이는 제주목사 李在護도 마찬가지였다(《全羅南北來案》, 앞 보고서; 《皇城新聞》, 광무 5년 6월 7일조). 따라서 이 혁폐조항도 제주도민들이 지향하는 선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116) 「民衆所願 惟地稅·洞布以外 一槩革罷 渠等亦地稅之不可不徵稅納也」《續陰晴史》, 광무 5년 6월 5일조 및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앞 책, 館第13號의 부속서 等狀 참조.

117) 「현재의 전담은 토지사용료로 매년 10斗落에 약 500文을 납부하고 戶布稅는 매년 2회 이를 징수한다. 그 세액은 郡邑의 경우 6등으로 나누어 1회 1호당 15文 내지 90文, 촌락의 경우 1호당 연간 평균 50내의이다. 또 별도로 漁船에 대하여 중형 1척에 매년 1貫文을 징수한다」《韓國土地農産調査報告》, 앞 책, 565쪽.

118) 崔鍾庫, 앞 논문, 96-98쪽 참조.

키지 못하였어도 교폐 문제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밖에 6월 7일 조칙에 따라 17일 유배인들이 다른 곳으로 移配되었고¹¹⁹⁾ 이 사건의 원흉인 봉세관 강봉헌과 1898년 봉기 이래 원당의 대상이었던 유배인들마저 구속되었다. 따라서 도민들은 이 항쟁을 통해 일단은 운동목표를 대부분 관철한 것으로 보인다. 그후 이 사건의 처리문제는 韓·佛間의 중대한 외교사안으로 되었는데, 첫째 장두들의 재판문제, 둘째 배상문제, 셋째 피살된 교인들의 장지문제였다.¹²⁰⁾

7월 18일 서울로 압송된 항쟁 관련자들은 프랑스의 간섭을 받아가면서 平理院의 재판을 받았다. 이 결과 이재수·강우백·오대현은 10월 9일 교수형에 처해지었다. 다른 관련자는 징역이나 곤장·무죄로 석방되었다.

배상문제는 프랑스 신부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피살교인에 대한 구휼금 지불요청을 하는 7월 30일자 프랑스공사의 조회를 시작으로 20여차례에 걸친 조회 끝에 1903년 말에 타결, 1904년 6월에 이를 도민(1인당 15錢 6厘씩 각출) 부담으로 배상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장지문제는 5월 31일 제주도에 입항한 2척의 프랑스 군함과 목사와의 약속에서 발달된 문제인데, 이것도 1903년 말에 가서나 타결되어 황사평으로 장지를 설정하게 되었다. 이로써 1901년 제주도 민란의 사후처리는 완결을 짓게 되었다.

IV. 民亂의 구조와 성격

1. 참여계층

이 항쟁에는 제주도 전지역에서 호당 1명 이상 참여할 정도로 거의 모든 民家가 관여하였다고 한다.¹²¹⁾ 참여계층이 全島的·全民衆的이었던 점은¹²²⁾

119) 金允植, 앞 책, 광무 5년 6월 17일조.

120) 柳洪烈, 앞 논문, 533-555쪽 및 金玉姬, 앞 책, 171-225쪽 참조.

121)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앞 책, 館第11號의 별지 第1回報告 및 姜昌一, 앞 논문, 131쪽 참조.

122) 「環一島十萬生靈이 罔死生捐生涯하야 狀者는 風餐露宿하고 老弱은 泣而送

민회가 개최된 직후 3郡民이 앞을 다투어 모여든 것이라든가, 2단계 무력항쟁기에 민군에 참여한 수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 각 陣마다 수천명씩이나 소속되어 있었다든가, 또는 무력항쟁에 참여하지 않은 村民은 군량이나 군수품을 측면에서 조달해 주었다는 사실들을 통해 입증된다.¹²³⁾

더욱이 이는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초계층적인 연합전선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단적인 예로 대정군의 경우 교인을 색출하여 처형하거나 이들로부터 贖錢을 징수하는 일에 座首·洞任·尊位·所任·警民長·機察將·里卒 등을 비롯한 官·民·上·下 모두가 가담하고 있어,¹²⁴⁾ 신분이나 직위에 관계없이 반천주교운동에 참여하였다. 제주성내의 경우는 무력항쟁기에 부녀자들, 특히 천주교에 대한 종교적·문화적·사회적 이질성 때문에 반천주교의식이 강했을 巫女·妓女·閨氏·妾들이 앞장 서서 교인을 체포하고 성문을 여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¹²⁵⁾ 그밖에 山砲手 300여명도 참여하여 우수한 무력을 제공하였다.¹²⁶⁾ 이렇듯 이 항쟁에 참여한 계층은 농민·향임·하급관리·포수·무녀·기생 등 이해관계나 계층적인 차이를 넘어 全民的인 연합전선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세폐와 교폐의 혁파라는 운동목표와 투쟁대상에 대한 확고한 의식 내지 의지를 운동의 전국면에서 시종일관 가지고 있었다. 이는 민회를 개최한 대정군민들이 세폐와 교폐를 혁파하기 전에는 절대로 귀가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든가,¹²⁷⁾ 민군과 교인과의 공방전이 치열하던 5월 23일 오대현 등의 해산권유에 “느릅나무 한 그루에 6兩을 징세하였으니 이와 같으면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였고¹²⁸⁾ 5월 10일 도망한

之호며 女子는 負糧而從之호야 首尾一箇月에 久益不懈호고 所經村落에 爭饋 糗糧호…(《全羅南北來案》, 앞 보고서.)

123) 金允植, 앞 책, 광무 5년 5월 9·16·17·18·20·21일조 참조.

124) <濟州牧大靜郡各里亂民作弊略抄> 《Mutel 文書：濟州—69》, 金玉姬, 앞 책, 자료편.

125) <濟州民亂時加害主動者列錄> 《Mutel 文書：濟州—146》, 위 책, 자료편.

126) 金允植, 앞 책, 광무 5년 5월 19일조.

127) 위 책, 광무 5년 5월 12일조; 《全羅南北來案》, 앞 보고서; 駐韓日本公使館 記錄, <三郡大小民等等狀>, 앞 책, 館第13號의 부속서.

128) 金允植, 위 책, 광무 5년 5월 23일조.

강봉헌이 다시 대정군수로 부임해 오자, 민군은 “차라리 대포 밑에서 죽으면 죽었지 강봉헌의 손에 죽을 수는 없다”고 하면서¹²⁹⁾ 더욱 決戰을 굳힌 것만 보아도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또 민회 단계에서 대정군민들은 봉세관 밑에서 虐民·作弊하던 奸吏 高時俊 등을 엄히 징계할 타도대상으로 지목하였는데, 2·3단계에서 이들을 처단하지 못한 민군은 6월 10일 마지막 중앙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도 이를 강력히 요청하여 관철시키기도 하였다.¹³⁰⁾ 그밖에 민란에 참여한 도민들의 이같은 저항의식은 목사나 군수들이 수 없이 해산을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폐와 교폐의 철폐와 민폐를 자행한 자들의 처단을 보장하기 전에는 결코 해산할 수 없다고 한 것이라든가, 민군의 등장에서도 여실히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각계각층이 확고한 저항의식하에 항쟁에 참여할 수 있었던 배경은, 첫째 전술한 것처럼 제주도는 봉건신분제나 지주전호제·토지 및 농민분화가 심하지 않았고 계급적인 갈등관계가 미약하였었다. 따라서 이같은 사회경제적 조건은 局地性·分散性·階級性 등을 초월하는 초계층적인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 때문에 이는 도민 전체의 생활을 위협하는 공동의 모순에 대항하는 연합전선이 용이하게 형성되는 요인이 되었다.¹³¹⁾

둘째 첫째와 같은 기본적인 조건하에 침탈적인 봉세관과 교인의 작폐는 도민의 전생활영역에 걸친 하나의 局地的 外壓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저항은 동일한 투쟁목표로서 세폐와 교폐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비록 계층별 이해관계가 상이할지라도 이를 초월해 全島的·全民的 저항체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 봉세관과 교인에 대한 도민들의 태도가 男女老少·上下層民·官民 구별할 것 없이 적대적이었던 점에서도 추찰할 수 있다.¹³²⁾

129) 위 책, 광무 5년 6월 2일조.

130) 위 책, 광무 5년 5월 12일조, 6월 7·10일조.

131) 姜昌一, 앞 논문, 61-62쪽 참조.

132) 捧稅官 姜鳳憲에 대해서는 「又各面民狀紛紛來呈皆言姜鳳憲之罪 或請捉送姜鳳憲 婦女童稚亦皆載手罵誓 恨不生啖其肉 非徒村民 邑人亦然 非徒邑人 官府

셋째 도민들은 봉세관이나 교인의 작폐에 대한 기본모순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세폐와 교폐가 자행될 수 있는 봉건적인 수탈적 조세수취구조와 천주교를 통한 외세침략을 하나의 주요모순으로까지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계층별 이해관계에 따라 고립적·주관적이었던 인식은 반봉건·반침략이라는 총체적·객관적 인식으로까지 발전하여 운동의 투쟁성과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넷째 조직적인 대중동원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민란의 전개과정을 볼 것 같으면, 도민들은 1단계 민회·등소기부터 상당히 조직적으로 국면에 대응해나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향촌공동체적 연대와 조직망이 그 바탕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보통 운동 지도부에서 촌민들을 동원할 때는 각 洞任·面任·里綱 등에게 通文을 띄워, 이들로 하여금 村民들을 동원하도록 하거나¹³³⁾ 그 책임하에 세폐와 교폐 척결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¹³⁴⁾ 물론 도민들의 잠재적인 불만과 저항의식을 구체적인 형태로 전화시키면서 체계적으로 선동하고 조직한 지도부의 역할도 부정할 수 없지만, 이 역시 기존 향촌조직망과 조직원이 운동조직과 운동원으로 심분 활용됨에 따라 촌민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참여하여 운동에 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東·西陣으로 대표되는 지도부와 기존 향촌조직, 그리고 일반 대중이 세폐와 교폐의 혁파라는 통일인식하에 결집됨에 따라 초계층적인 조직적 연합전선이 운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中上下一辭同斥 對面叱責」《續陰晴史》，광무 5년 6월 5일조. 천주교인에 대해서는「第念事狀하며 敎徒之行爲가 果至何境이던지 無論牧郡邑村하고 嘯聚響應하고 誓死不歸야 期欲盡滅이오니 實是萬夫之共憤이라」《全羅南北來案》， 앞 보고서.

133) 「大靜郡東門以東民千餘名이 越來本郡右面好近法選等地야 威脅里綱曰 每村男丁一百名式領率等待하라 勸諭」《全羅南北來案》， 위 보고서; 「二邑共一百五十洞每洞徵民來會者不下百人 分半替番 留陣者常不下七八千人 各待三四日糧」《續陰晴史》， 광무 5년 5월 24일조.

134) 「令各洞任押送敎人眷屬 縛置陣中」·「而猶縛置邑三徒面任於陣前 責令捕納高伯龍等」《續陰晴史》， 광무 5년 5월 19일조, 6월 8일조. 고종조 상당수의 농민봉기 기층조직도 제나 두메 외에 郡(縣)一面一洞(里)을 잇는 향촌조직과 그 조직원이었다(拙稿, 앞 논문, 690쪽).

2. 지도부 문제

기존의 대부분의 논저는 지도부 역할을 하던 이 봉기를 주도한 前衛組織을 상무사로 파악하고 있다.¹³⁵⁾ 그 논저로는 상무사와 교인과의 충돌이 봉기의 발단이 되었다는 점과 장두로서 지도부 역할을 한 이재수·오대현·강우백 등이 상무사 간부였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¹³⁶⁾ 그러나 재고의 여지가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상무사의 활동과 조직에 관한 자료는 주로 천주교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¹³⁷⁾ 또 오대현·강우백이 장두로 나서기 전에 이미 대정군민의 주체적인 민회가 개최된 점, 그리고 비록 대정군민을 중심으로 시작된 봉기이나 곧 3군민 모두가 참여한 점만을 보아도, 반천주교운동을 위해 대정군 유지들로 구성된 상무사 자체를 전적으로 지도부 내지 전위조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이 민란이 기본적으로 각계각층이 이해관계를 초월해 전도민이 참여한 연합운동이었으나 그 진행과정에서 주도권이 하층민중 주체의 서진으로 넘어간 점을

135) 金玉姬는 商務社를 대정군 토착세력이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일본인과 결탁해 설립한 것으로 暴徒를 선동해 천주교인을 무참히 살해하게 한 조직체로 보고 있다. 鄭鎭珩은 商務社는 일본어민의 세력침투와 敎弊, 그리고 관리들의 탐학에 대응하여 자구보호책으로 설립된 모순 대항체로 민란에 주된 역할을 하였다고 하였다. 반면에 姜昌一은 商務社를 회의적으로 평가하는 논조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136) 이같이 인식하는 근거자료는 천주교측 자료이다. 그러나 이 자료는 신부들이 敎弊가 주요한 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시키고 천주교에 대한 박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민란이 있기 전 대정군수 蔡龜錫이 교인을 捉治한 일이 있었고 또 천주교 반대운동을 한 商務社에 그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려는 측면에서 기록하였다. 이는 捧稅官 姜鳳憲의 보고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보고서·의교문서·제관기록 등에도 편향적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차르비판 없이 받아들이면 자연히 商務社에 촛점이 맞추어질 수 밖에 없다.

137) 한 예로 천주교측 자료에 의하면 商務社 회장은 太靜郡守 蔡龜錫이었으나, 《續陰晴史》에 의하면 蔡龜錫 자신은 물론 金允禎이나 지방관들도 商務社와는 무관하다고 하였다. 또한 蔡龜錫은 대정군 토착세력의 대표로서 1896년과 1898년 농민봉기 때 술선수범하여 진압하여 제주도민들의 원성을 산 일도 있었다. 蔡龜錫은 기본적으로 일반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蔡龜錫을 비롯한 대정군 유지들로 구성되었다는 商務社 역시 향촌지배권의 자위일 뿐 일반 郡民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데는 한계성을 안고 있었다.

보면, 대정군 상층민들이 자위를 위해 조직한 상무사를 지도체로 보는 것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상무사가 봉기가 있기 한 달전부터 향촌지배권을 자위하기 위해 조직화를 꾀하고 천주교인들에 대한 실력행사를 함으로써, 민회가 결성될 수 있는 주체적 조건이나 조직기반 그리고 그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일정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단계에서 오대현·강우백이 장두로 추대되었다는 의미에서는 상무사의 기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지라도, 적어도 2단계 실질적인 무력항쟁기 이후에는 상무사의 존재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었다. 즉 상무사라는 초기과정에서의 부분조직·부분운동이 전체조직·전체운동에 흡수 재편성된 것이다. 따라서 지도부 내지 전위조직 역시 전체적인 운동의 전개과정 속에서 찾아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프랑스공사가 광무정부에 제출한 〈濟州大靜郡私立商務社首魁及三郡各里亂民狀頭姓名錄〉을 보면은 장두 또는 적극가담자로서 대정군수 채구석 외에 63명을 지목하고 있어, 지도부에 대한 일단의 양태를 엿볼 수 있다.¹³⁸⁾ 이중 대정군민이 11명, 정의군민이 9명, 제주군민이 19명, 제주성내가 24명이란 지역적 분포를 이루고 있다.

제주군과 성내에 많은 것은 5월 28일 성문을 여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거나 교인들의 체포·처형에 적극 가담한 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정·정의군 출신은 처음 민회를 주도했던 지역의 거주인이 많고 제주군은 봉세관에 의해 漁稅를 강징당한 浦口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다.¹³⁹⁾ 이는 민회를 주도했던 층이 이후의 항쟁도 계속 지도했고 세폐와 교폐가 심했던 지역 출신들이 적극 가담했음을 의미한다.

또 신분별로 보면은 官奴 1명, 領將 1명, 萬戶 1명, 別長(砲手) 1명, 司果 1명, 營門使令 2명, 座首 2명, 洞長 1명, 砲手 3명과 나머지 平民으로

138) 《舊韓國外交文書》法案 2, 광무 5년 7월 30일, 照會第14號 부록. 《Mutel文書:濟州-134(2)·147》, 金玉姬, 앞 책, 자료원 보관 참조.

139) 위 자료와 《濟州牧三郡各浦魚基魚網稅及魚糞口文成冊》 비교 참조.

보이는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武官職・洞任・砲手를 비롯한 각계각층이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다.

무관직과 포수들의 지도적인 참여는 무력투쟁에 있어서 일조를 하였을 것이다. 또한 동임층의 참여는 이들이 향촌사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중동원과 조직화를 용이하게 하였을 것이다. 특히 지도부 또는 적극가담자인 63명중 56명이 평민이거나 관노・포수・영문사령과 같은 하층민층들이었던 점은 이들이 실질적으로 이 운동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항쟁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향촌지배세력인 상층민이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단적인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위 자료에 소위 亂魁로 표기된 대장급 상층지도부는 모두 10명으로, 성내의 장두 김남혁을 제외하면 모두 대정군 출신으로서 강우백・오대현・이재수 등이다. 이는 봉기가 대정군민을 시발로 하였고 이 때의 지도부가 시종 항쟁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술적인 차원에서 5월 20일경 東・西・南・北陣, 24일경 東・西・南陣, 27일경 이후 東・西陣으로 민군의 陣營을 재편성하였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재수가 이끄는 西陣과 오대현 형제와 강우백・강석주 등 주로 향임층 내지 지식층이 이끄는 東陣¹⁴⁰⁾이라는 2원화된 조직체제와 지도부가 운동의 국면을 이끌어나갔다.

동진의 경우 무력항쟁이 초기엔 강우백이 이끌었지만, 5월 14일 천주교인에게 구금되었다가 23일 석방된 오대현이 민회 장두였던 명분과 기존 향촌 지배권 내지 그 세력을 발판으로 지휘권을 장악하였으므로 오대현의 지도노선에 좌우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서진의 경우는 이재수에 의해, 동진의 경우는 오대현에 의해 대표되는 운동방향과 각 국면의 대응양태를 나타내었으며 그 조직 역시 大將・中軍將・執事・書記・顧問 등 군사적인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¹⁴¹⁾

140) 「東陣 狀頭吳大茲兄弟 又有姜錫疇者 頗識文字 粗解事理云」《續陰晴史》, 광무 5년 5월 28일조.

141) 위 책, 광무 5년 5월 27일조;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앞 책, 館第13號의 별지 第2回報告; 〈濟州牧大靜郡各里亂民作弊略抄〉《Mutel文書; 濟州-69》, 金玉姬, 앞 책, 자료편 참조.

그런데 동·서진간에는 지도원리·투쟁대상·노선상의 차이가 있었다.¹⁴²⁾ 5월 23일 석방된 동진 장두 오대현이 목사와 신부의 중용에 따라 민군에게 해산을 설득한 점이라든가,¹⁴³⁾ 28일 제주성에 입성할 때 뒷일이 두려워 주저하는 동진을 먼저 입성한 서진이 권유하여 동참케 한 점이라든가,¹⁴⁴⁾ 29일 서진이 관아에 들어가 교인을 색출하고 발포한 일로 동·서진이 충돌한 점, 또는 체포한 교인을 처단하는 과정에서도 동·서진의 차이가 뚜렷하였다.¹⁴⁵⁾

또한 3단계 관군과 대치한 국면에서 등소를 통한 운동방법은 동·서진 모두에게 채택되고 있었지만, 관철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의지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6월 1~8일까지의 전국면울 《續陰晴史》를 통해 통괄해 보면, 동진은 중앙정부군이 파견된 이래 제주성 근처에만 있으면서 해산을 전제로 한 등소 외에 별다른 운동을 전개시키지 않은 채 사태를 관망하는 듯한 타협적·소극적 자세를 견지하였다.

이에 반해 서진은 한편으론 等訴라는 합법적인 공간을 활용한 온건적인 방법을 모색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론 각지를 순행하면서 교인들을 색출해 처형하는가 하면, 高時俊·高伯龍 등 봉세관과 천주교에 부동하여 작폐를 자행한 자들을 처단하려고 노력, 잔존세력의 척결이라는 굳은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동진의 경우 온건노선에 의거하여 정부와의 일정한 타협 속에서 등소를 통해 운동목표를 실현하려고 도모한 반면에, 서진의 경우는 강경노선에 의거하여 신부·관리·정부군을 불문하고 민폐를 혁파하기 위해서 는 타협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같은 동·서진의 차이와 내부갈등은 본질적으로 이재수와 오대현으로

142) 東·西陣 차이와 내부갈등은 姜昌一. 앞 논문, 138-145쪽 참조. 姜昌一은 이같은 내부갈등이 民軍이 진압되는 주요요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밖에 민군이 진압된 요인은 40여일간의 항쟁으로 民軍이 지쳐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군이 계속 증파된 점과 2·3단계를 거치면서 民願이 어느 정도 해소된 데다가(특히 敎弊) 중앙정부와 민폐 혁파에 대한 일정 수준의 타협이 이루어진 점도 무시할 수 없다.

143) 金允樞, 앞 책, 광무 5년 5월 23일조.

144) 위 책, 광무 5년 5월 28일조.

145) 「然東陣處事 頗有條理 待本官及大靜 極盡官民之禮 凡爲民弊 一切禁斷 教人捉來 反覆詳審 多得生放 西陣乘勢自恣 不有官長 民兵持統 突入東軒 搜捉教人者爲四五次」《續陰晴史》, 광무 5년 5월 29일조.

대표되는 계급인식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¹⁴⁶⁾ 오대현은 대정군 향촌지배세력을 대표하는 鄉長으로 商業權·租稅徵收權 등을 장악하고 있던 토착상층세력의 이권을 대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농민적인 인식과는 간격이 있을 수 밖에 없었으며 이는 항쟁의 전개과정에서 여실히 투영되고 있었다.¹⁴⁷⁾

반면에 이재수는 출신성분이 官奴로서 무력항쟁기에 서진 장두가 되어 대중적인 입장에서 비타협무장투쟁을 전개하였고 운동목표 역시 일반 대중들의 모순 인식에 입각하여 저항·변혁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민회와 같은 대중집회 단계까지는 상무사 계열의 양반유생층·향임층들이 지도적인 역할을 하였어도, 2단계 비타협적 무력항쟁기 이후부터는 이재수를 중심으로 한 일반 대중 주체의 서진이 위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이는 이재수가 「都元帥」의 직위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서진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각계각층의 참여기반 위에서 활동한 지도부 중에서도 동진보다는 서진이 보다 대중들의 욕구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도민들로부터 환호를 받았고¹⁴⁸⁾ 이후 하나의 역사적 영웅으로서 이재수가 구전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이다.¹⁴⁹⁾

이같은 차이는 세폐와 교폐에 대한 인식 정도와 국면에 대응하는 방법에서 강·온의 차이 뿐만 아니라 노선 차이도 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동·서진이 외세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인식 기반을 갖고 있었으나, 봉건적인 모순에 대한 인식에서는 차별성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서진은 상이한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동일항쟁에 임하였어도, 결정적인 시기에 직면해서는 계급상의 차별성을 극복하지 못한 채 갈등을 조장

146) 姜昌一, 앞 논문, 118-127쪽 참조.

147) 東陣의 지도부가 鄉任層·兩班儒生層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外村大民知事者 會議勸東陣解散」《續陰晴史》, 광무 5년 6월 5일조를 보아도 상층민과 東陣의 유착성이 나타난다.

148) 「邑村人皆稱李濟秀 人物英豪 能斷大事 稟挈山精氣 非等閒人也 邑中人民送 至西門外 攬手稱賀曰 賴將軍之德 滅盡教人 徒此三郡人民可以安堵 感戴如天」《續陰晴史》, 광무 5년 5월 30일조.

149) 秦聖獻, 《南國의 民譚》(螢雪出版社, 1977) 참조.

하여 통일된 힘의 결집을 분산시킴으로써 지도부 자체의 한계성을 나타내었다.

특히 이같은 지도부의 차별성·한계성은 한국근대민중운동사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는 점이 있다. 19세기 후반기나 20세기 초에 일어난 많은 농민봉기 중에는 향촌 상층민에 의해 주도된 것들이 있는데, 이들 봉기에서는 反封建性을 확고히 관철시킬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계급적인 인식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없었다. 또 이같은 점은 1905년 이후 전개된 의병 전쟁에서 유생층의 노선과 평민층 노선과의 차이와도 직결되는 문제로서, 당시 민중운동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일본인 관련문제

1870년대 이후 급격히 증대된 제주도 연안에서의 일본인 어업행위는 일본인 소유의 漁具나 漁船이 제주도 어민들의 장비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도민들의 漁利를 침탈해 생활권을 위협하였다.¹⁵⁰⁾ 또 일본인들은 인명을 살상하고 재산을 약탈하는 등의 민폐를 자행하여 도민들과 잦은 마찰을 일으키곤 하였다.¹⁵¹⁾ 1899년에는 제주도 연안에 入漁하는 일본인 어선수가 3,4백척이나 되었으며¹⁵²⁾ 1901년 당시에는 飛揚島에 거주하는 150명을 비롯해 모두 445여명의 일본인이 제주도 연안이나 주변 도서에 거주하면서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¹⁵³⁾

그런데 이들 일본인중 비양도에 창고를 설치하고서 어업에 종사하던 아라가와(荒川留重郎) 등의 일본인이 이 민란에 관련되었는지의 여부는 현재 상반된 설이 있다.¹⁵⁴⁾ 이를 부정하려는 설이 있는가 하면,¹⁵⁵⁾ 일본인이 상무사

150) 「島民之衣食이 在於漁採어늘 現今日人이 獨專其利하고 無有定稅하니 哀此 島民이 歎手失業하얏고」《皇城新聞》，광무 4년 12월 12일조.

151) 李元淳, 앞 논문 참조.

152) 《皇城新聞》，광무 3년 8월 29일조.

153)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앞 책, 館第11號의 별지 第1回報告 보고서.

154) 이 일본인 이름은 종래 荒川留十郎(멸치 상인)으로 표기하였으나,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앞 책, 館第11號의 별지 第1回報告에는 荒川留重郎(어업 종

와 결탁해 적극적으로 도민들을 사주·선동하였다는 견해가 있다.¹⁵⁶⁾ 결론적으로 말해 《續陰晴史》 기록이나 천주교측 자료, 그리고 관련설을 단언할 수 있는 이재수의 1901년 6월 2일자 아라가와 등에게 보낸 편지를 볼 때 모종의 관련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¹⁵⁷⁾ 그렇다면 어떠한 관련형태였고 왜 일본인이 이 민란에 개입하였는지가 문제이다.

일본인의 개입은 일본인의 사주·선동이 이 항쟁의 한 원인이었다고 일반적으로 몰아부친 천주교측 자료와는 달리 초기 단계부터 개입한 것은 아니었다. 5월 15일 이후 무력항쟁에 돌입하면서 민군은 일본인에게 무기 구입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일본인 역시 기꺼히 응하였다.¹⁵⁸⁾ 또 무기 구입과정에서 관제를 맺게 되면서 5월 29일에는 아라가와를 비롯한 일본인 3명이 서진의 이재수를 찾아왔다.¹⁵⁹⁾ 이들은 프랑스 신부를 석방한 것을 책망하면서 무기가 부족하면 도와줌은 물론 유사시에는 일본으로 피신시켜 줄 터이

사자)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일본순사가 직접 조사 기록한 위 보고서 기록을 따랐다.

155) 鄭鎮珪·姜昌一, 앞 논문.

156) 柳洪烈·朴廣成·金玉姬, 앞 논문.

157) 편지 전문은 아래와 같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앞 책, 館第13號의 부속서).
飛揚島荒川汝公

昨別後平安否 吾於間心思大端 書呈公等 依所約 一體同力如何 餘萬不備伏護

辛丑四月六日(양력 1901년 6월 2일: 필자) 都元帥 李在樹

이 편지는 일본순사들이 6월 2일 飛揚島에 도착하여 직접 입수한 것으로 편지가 전달된 것만은 확실하다. 그런데 일본 공사관이나 영사관은 일본인이 사주·선동하였다는 천주교측의 수 차례에 걸친 보고가 중앙으로 올라가 천주교측의 관련 주장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이 때문에 군함과 순사까지 파견했을 것으로 추측되나, 등 보고서에는 이런 편지를 보고도 일본인이 개입되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 이는 이로 인하여 외교문제로 의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술책으로 자체 보고서에서도 은폐시키고 있는 만큼 당시 일본측 기록을 보는데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158) 金允植, 앞 책, 광무 5년 5월 19일조.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앞 책, 館第13號의 별지 第2回報告에 民軍의 무기중에는 일본검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민간 口傳에도 아라가와가 李在樹에게 검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는 점(韓國精神文化研究院編, 《韓國口碑文學大系》9-2, 1981, 118쪽)으로 보아 일본인에게의 무기 구입은 사실로 보인다. 그리고 위 보고서에 총은 엽총·조총·사냥총으로 일본총은 없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구입 무기는 주로 창이나 칼로 보인다.

159) 金允植, 위 책, 광무 5년 5월 29·30일조.

니 신부를 살해하라고 종용하였다. 이재수는 이를 깊이 믿고 석방한 신부를 다시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신부는 피신한 뒤였다.

그후 대정군을 순행하면서 교인을 색출 차단하고 있던 이재수는 2척의 프랑스 군함이 入島하여 무력시위를 하고 중앙정부군과 신임 목사가 효유에 나서는 등 긴박한 상황이던 6월 2일 아라가와 등에게 5월 29일 약속에 따라 위 편지와 같은 협력을 요청하였다. 또 6월 4일경 일본순사 일행이 동·서진을 방문하였을 때도 동·서진 모두 협조를 바라던 눈치였다고 하며 이때 장두들이 일본어선에 편승하여 도피할 것이라는 풍설이 나돌기도 하였다.¹⁶⁰⁾

그렇지만 일본인의 요구에 따라 신부를 다시 체포하려 하였고 협력 편지를 보내는 등 일시 일본인에게 선동된 감은 있으나, 6월 2일 이후에는 어떠한 자료에서도 일본인이 개입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프랑스 군함의 동태와 제반 상황을 파악 감시하기 위해 파견된 일본 군함과 순사들이 단속한 탓도 있겠지만,¹⁶¹⁾ 당시 전반적인 추세로 보아 그 이상의 관련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일본인 관련은 전개과정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은 아니었으며 부수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 왜 일본인들은 신부 살해를 종용하거나 협력을 제공한 것일까. 당시 일본어민들은 제주도 연해에 대거 진출하여 漁探을 일삼았는데, 종래 어획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그 이익을 독점하고 있었다.¹⁶²⁾

그러나 1899년 봉세관이 들어온 뒤부터 이와 결탁한 교인들이 도민들과

160)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앞 책, 館第13號의 별지 第2回報告.

161) 金允植, 앞 책, 광무 5년 6월 3일조 및 姜昌一, 앞 논문, 137-138쪽 참조. 이 당시 한반도는 일본·영국·프랑스·러시아·미국과 같은 열강의 각축장으로써 中立化論이나 露·日間の 滿·韓交換論이 대두되고 있었고 중국의 義和團 이후 극동위기가 고조되었기 때문에 각국이 외교사안에 민감한 상태였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露·日關係, 開港場 확대, 鬱陵島 森林 및 漁業問題, 鐵道建設, 馬山浦租借問題等に 깊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던 일본은 한반도 침략을 위해 대소사건을 불문하고 일일이 현지조사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은 프랑스 군함이 파견된 메다가 일본인이 관련되었다는 풍문이 있는 제주도에 군함 濟遠號를 파견한 것으로 보인다.

162) 《皇城新聞》, 광무 4년 12월 12일조 참조.

마찬가지로 일본인에게도 해산물에 漁稅를 징수함은 물론¹⁶³⁾ 매대물에 商業稅마저 징수하였다.¹⁶⁴⁾ 또한 당시 제주도 연안에는 20여개의 일본어민 창고가 있었는데,¹⁶⁵⁾ 앞서와 같은 무명잡세의 실상을 보아 이들 창고도 당연히 징세하였을 것이다. 게다가 漁基·漁綱과 각 포구의 산물에 대하여 봉세관이 교인들로 하여금 執稅하도록 하고 都賣를 정하여 일반 상인이나 本主人이 매대할 수 없게 한 일도 있었다.¹⁶⁶⁾ 각 포구에 주로 거주하던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어채물 수송과 상행위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봉세관과 교인들에게 그 이익을 빼앗기거나 방해를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인들은 막대한 양의 어채물에 대해 전과 같은 이익을 취하지 못함에 따라 자연히 봉세관과 교인들을 적대시하였다. 더욱이 새로운 세력으로 봉세관과 천주교가 등장하여 기존 질서를 재편성함에 따라, 그동안 어업 전진기지로서 제주도에 구축한 일본 어민들의 사회경제적 기반 역시 심각한 위협을 받았을 것이다.

이에 일본인들은 봉세관과 천주교에 항거하는 도민들의 거사에 호응하여 민군의 무기 구입에 캐히 협력하였고 5월 29일에는 이재수를 찾아가 신부마저 살해하도록 권유하였던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일본 당국과는 무관한 일로 제주도에 있는 일본 어민과 상인들이 자신들의 운신의 폭을 위협하는 천주교 세력을 제거하여 이권을 독식하고 기존의 침탈기반을 보지하려는데 불과하였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동·서진 민군에서 일본인의 협조를 요청한 것은 비록 이것이 일본인을 주체적으로 이용하려고 한 측면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을지라도, 오히려 외세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는 한계성을 보인 면이 더 크다. 특히 1898년 남학당 주도하의 봉기에서도 제주도를 일본에 복속시키자는 李容鎬 등의 密計를 받아들여 결국 봉기를 실패하는 한 원인이 되었

163) 「日本漁採民黃川者 素憎教人之苛捧漁稅 陰勸民黨舉事 略李濟秀以銃劍等物」
《續陰晴史》，광무 5년 5월 29일조.

164)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앞 책, 館第11號의 별지 第1回報告.

165) 위 보고서.

166) 《皇城新聞》，광무 5년 6월 22일조 참조.

었다. 그럼에도 일본인을 믿고자 하는 바가 있었던 점은 당시 민중운동의 의세에 대한 인식의 불철저성을 반영하는 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4. 성 격

1900년을 전후로 한 제주도에서의 봉세관 강봉헌의 세폐는 본질적으로 광무정권의 봉건적인 수탈적 조세정책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것이 제주도 在來의 모순구조를 매개로 더욱 가속화된 양태로 전개된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 세폐문제는 당시 국가체제의 봉건성과 유리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변혁 역시 정치투쟁 내지 체제투쟁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실제 지금까지 논술해 온 전체적인 항쟁의 전개과정을 놓고 볼 때, 제주도 전민중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봉세관에 의해 더욱 악화된 조세수취구조의 변혁을 지향한 면을 찾아볼 수 있었다. 즉 세폐의 혁파에 더 주안점을 둔 민회에서 구체화된 조세수취구조의 변혁이라는 운동목표는 항쟁의 전국면에 걸쳐 시종일관 관철되었다. 도민들은 결국 세폐를 혁파하겠다는 17條目的의 혁파조항을 운동의 성과물로써 察理使로부터 얻어내기에 이르렀다.

그 변혁 방향은 봉건적인 수탈 성격을 가진 일체의 무명잡세를 혁파하고 正稅(地稅·戶布稅)만 징수함은 물론 이를 제주도에 자채 운용하는 선상에 있었다.¹⁶⁷⁾ 이는 제주도의 고질적인 조세수취구조상의 질곡을 타파하고자 하는 극지적인 抗租抗稅運動이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反封建鬪爭으로, 1862년과 1890·1898년 제주도 농민봉기의 귀결점이란 점에서 제주민중운동사에서 접하는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 반봉건운동은 목사를 매개로 중앙정부와 합법적인 투쟁을 전개한 절이나, 정세만은 중앙에 납부하겠다고 한 점으로 보아 체제 자체까지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다. 또한 이는 1898년 봉기 때 제주도에서의 독립국

167) 「王土民豈無征稅之應納乎 稅額一欸只以洞布田結確定修報于京部 一年所納指數定式使之應納 而無名雜稅一一革除 而捧稅官之所捧錢數 若過定式是去等窮查推給是乎旅……日後捧稅使三郡守量宜磨鍊 一定摠切勿混亂 備充於度支原稅是乎遣」〈三郡大小民人等等狀〉,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알 책, 館第13號의 부속서.

가 건설까지도 기도한 것에 비추어 볼 때,¹⁶⁸⁾ 제주도 특유의 분리주의·독립주의가 크게 작용한 것 같지는 않다.

다음은 반천주교 문제이다. 1900년 전후 한반도는 제국주의의 식민지 이권쟁탈전의 무대에 편입된 반식민지 상태에서, 천주교 선교에 따른 정치사회적 폐해로 말미암아 천주교인과 일반 민중들과의 대소 충돌사건이 있었던 객관적·주체적 조건하에 있었다. 이같은 배경속에 천주교인과의 무력투쟁으로 600여명의 교인이 살해되고 천주교 폐해의 척결이 세력의 혁파와 함께 운동목표였던 제주도 민란은 당시 최대의 교안으로 반천주교운동과 떼어 놓고 인식할 수 없다.

또한 프랑스 신부들은 제국주의적 문명관에 입각하여 제주도민들을 야만인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며¹⁶⁹⁾ 치외법권을 남용하여 도민들의 民刑事에까지 간섭하는 절대권력을 향유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이 민란에 대처하는 프랑스 당국은 군합 파견은 물론 주동자에 대한 재판과정 간섭, 정부에의 강압적인 요구에 의한 묘지설정과 배상금 징수라는 제국주의적 논리를 관철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프랑스 천주교는 제국주의 침략의 한 방편이 되었던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1900년 중국의 의화단운동이 반기독교운동에서 반제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처럼, 1901년 제주도에서의 현상적인 반천주교운동도 본질적인 면에서는 반제국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논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 무력투쟁에 참여한 민군은 싸움의 대상인 교인들을 프랑스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민군은 평소 신부와 같은 문명국인이자 프랑스인이라 자처하면서 프랑스 신부의 특권을 배경으로 교회를 자행한 교인들을¹⁷⁰⁾ “法國놈”·“法國년”으로 간주하고서 살해하였다.¹⁷¹⁾ 또 5월 28일 제주성에 무혈

168) 조성윤, 앞 논문, 223-226쪽 참조.

169) 《濟州事件(No. 56)》·《Mutel 報告書》, 金玉姬, 앞 책, 자료편 참조.

170) 「敎人之犯罪者를 官或捉則 稱以敎人是法國人하고 率黨劫囚以去事」《皇城新聞》, 광무 5년 6월 21일조 및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앞 책, 館第13號의 별지 第2回報告.

171) 《濟州事件(No. 56)》, 金玉姬, 위 책, 자료편.

입성한 후 이재수는 스스로 이르기를, “洋人을 토멸하고서 제주성을 회복하였다”고 하였다.¹⁷²⁾

또한 프랑스 신부가 자국 군함의 파견을 요청한 다음날인 5월 21일 채구석이 민군을 찾아가 효유하였을 때 민군은 “비록 교인과 싸우다 패배하여 프랑스 천지가 될지라도 교폐가 심했던 최형순을 처단하기 전까지는 해산할 수 없다”고 한 일도 있었다.¹⁷³⁾ 게다가 천주교와 일체화된 프랑스 당국이 2척의 군함과 군대들 파견하여 무력시위를 하자,¹⁷⁴⁾ 민군은 이들을 하나의 침략세력으로 인식하고서 저항하려 하였다.¹⁷⁵⁾

이런 점들로 보아 민군은 단지 반천주교 차원에서의 교폐 혁파 뿐만 아니라, 신부와 교인의 축출을 통해 프랑스라는 외세를 제주도에서 물리치고자 하는 反侵略, 더 나아가 反帝國의 지향에까지 인식과 실천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제주도민들은 한치의 타협없는 반천주교투쟁을 전개한 결과, 察理使·濟州地方官·프랑스 신부간에 敎弊 방지를 목적으로 체결된 “敎民和議約定”을 얻어내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V. 맺 음 말

지금까지 1901년 5월 초순부터 6월 중순에 걸친 濟州民亂에 관해서 알아 보았다. 제주도민들은 이 항쟁을 통해 기존의 조세수취구조를 개선하는 17 조항의 傳令과 교폐 방지를 위한 敎民和議約定을 얻어내는 제도적·실질적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이 민란의 의의와 그 한계성을 정리하여 결론에 대신할까 한다.

172) 「自謂討滅洋人 恢復州城」《續陰晴史》，광무 5년 5월 29일조.

173) 「民曰 聞神父電招兵艦 民等聚在一處 爲一砲盡滅固所願也 蔡曰以後事尤不可言 濟州將爲法國天地 奈之向 民曰 法國天地亦好 蔡君反覆開諭 民曰 不必他求 但送亨順一人 事可解矣」《續陰晴史》，광무 5년 5월 21일조.

174) 「法國兵丁이 下陸하야 渠自馳往于民會所하야 盡爲勦滅之意로 無數恐喝頭頭이 日至二三次어늘」《全羅南北來案》，앞 보고서.

175) 韓國精神文化研究院編, 앞 책, 116-123쪽 참조.

첫째 이 민란은 항조항세투쟁을 통한 변혁운동이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를 시종 협상의 대상으로 인정한 점과 무명잡세 외의 합법적인 正稅만은 중앙정부에 납부하겠다고 한 점으로 보아 국가체제 자체까지는 부정하지 않았다.

둘째 이 민란은 반천주교를 통한 외세에 대한 저항운동이었다. 그러나 같은 외세이자 침탈세력인 일본인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한 사실은 비록 이것이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수적인 현상이었을지라도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부족하였던 일면이다. 이는 당시 민중운동의 외세에 대한 인식의 불철저성을 반영한 사례로 보인다.

셋째 이 민란은 각계각층이 참여한 민중운동이었다. 그렇지만 향장이었던 오대현과 관노였던 이재수로 대표되는 동·서진간의 계급적인 갈등은 민군의 통일된 힘의 결집을 분산시켰다. 즉 서진은 강경노선에 입각하여 침탈세력의 완전한 척결과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꾀하였다. 이에 반해 동진은 온건노선에 입각하여 봉건정부와의 일정한 타협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이는 주로 향입층·지식층이었던 동진 지도부의 부르조아적인 개량적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901년 제주민란은 세폐와 교폐의 혁파라는 운동목표를 놓고 각계각층이 이해관계를 초월해 전 도민이 참여한 연합운동으로, 그 진행과정에서 주도권이 하층민중 주체의 서진에 있었던 反封建·反帝民衆抗爭으로 성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국가적·민족적·계급적인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었다.